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25

방송통신 매체 융합에 따른 편성규제 실효성 제고방안 및 해외사례 비교연구

Study of the Effective Regulations on Television
Programming in a Converged Media Environment and
Comparison of the Oversea Cases

2020.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25

방송통신 매체 융합에 따른 편성규제 실효성 제고방안 및 해외사례 비교연구

(Study of the Effective Regulations on Television Programming
in a Converged Media Environment and Comparison of the
Oversea Cases)

심홍진/정은진

2020.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통신 매체 융합에 따른 편성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 및 해외사례 비교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심홍진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정은진 연구원

목 차

요약문	x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주요 내용	3
2. 연구방법	3
제 2 장 국내 및 해외 OTT 서비스 규제 현황	4
제 1 절 국내 OTT 서비스 규제 동향	4
1. 국내 법체계 현황	4
2. 국내 OTT 서비스 규제 경과사항	5
제 2 절 해외 OTT 서비스 규제 동향	8
1. 미국	8
2. 유럽연합	10
3. 영국	12
4. 프랑스	14
제 3 장 주요 편성규제 현황	6
제 1 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편성비율 제한	16
1. 법령 및 고시 현황	16
2. 규제 연혁	17
제 2 절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18

1. 법령 및 고시 현황	18
2. 규제 연혁	19
제 3 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	22
1. 법령 및 고시 현황	22
2. 규제 연혁	25
제 4 절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26
1. 법령 및 고시 현황	26
2. 규제 연혁	29
제 5 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31
1. 법령 및 고시 현황	31
2. 규제 연혁	32
제 6 절 분야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33
1. 법령 및 고시 현황	33
2. 규제 연혁	34
제 4 장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편성비율 제한의 쟁점 및 개선 방향	6 3
제 1 절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37
제 2 절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39
제 5 장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의 쟁점 및 개선 방향	1 4
제 1 절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41
제 2 절 개선 방향 관련 연구반 의견	46
1. 전체 방송시간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에 대한 의견	46
2.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에 대한 의견	49
제 6 장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의 쟁점 및 개선 방향	0 5
제 1 절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50
제 2 절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54
제 7 장 기타 편성규제 항목별 쟁점 및 개선 방향	7 5

제 1 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에 대한 검토	57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57
2.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59
제 2 절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에 대한 검토	60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60
2.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61
제 3 절 지상파 DMB 규제 적용에 대한 검토	62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62
2.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63
제 4 절 규제 항목별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64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64
2.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65
제 8 장 결 론	67
제 1 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편성비율 제한 개선 방향	67
제 2 절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의 개선 방향	68
1. 전체 방송시간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관련 제안	68
2.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관련 제안	68
3. 지역방송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관련 제안	68
제 3 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제도의 개선 방향	68
제 4 절 기타 편성규제 항목별 규제 개선 방향	69
1.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규제 관련 제안	69
2.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관련 제안	69
3. 지상파 DMB 규제 적용 관련 제안	70
4. 규제 항목별 산정기준 관련 제안	70
참고문헌	71
[부록 1] 방송법	74

[부록 2] 방송법 시행령	77
[부록 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8

표 목 차

<표 2-1> 방송과 OTT 서비스의 법률 체계 비교	5
<표 2-2> 2019년 김성수 통합방송법안 1, 2차 발의안 사업자 분류	6
<표 2-3> 제20대 국회의 통합방송법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7
<표 3-1>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의 변화(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71
<표 3-2> 방송사업자 유형별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9
<표 3-3> 외주제작 프로그램 관련 의무편성·편성제한 비율 추이	12
<표 3-4>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비율	23
<표 3-5>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24
<표 3-6>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 비율의 변화	28
<표 3-7>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27
<표 3-8> 방송사업자 유형별 영화·대중음악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비율	29
<표 3-9>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대중음악의 의무편성 비율 변화	33
<표 3-10>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유형별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	33
<표 3-11>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유형별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의 변화	38
<표 3-12> 방송사업자 유형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제한	43
<표 3-13>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제한의 변화	43
<표 5-1> 지상파방송 3사/중편PP 4사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2019년)	34
<표 5-2> 매체별 광고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2015~2019년)	44
<표 6-1> 국내제작 신규애니메이션 편성규제 현황	55
<표 6-2> 지상파방송 4사의 전체 애니메이션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추이(2017~19년)	25
<표 6-3> 지상파방송 4사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추이 (2017~2019년)	35

<표 7-1>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규제 현황	26
<표 7-2> 편성비율 산정기간 현황	5

그 립 목 차

[그림 5-1] 지상파 방송사업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2010~2019년)	44
--	----

요 약 문

1. 제 목

방송통신 매체 융합에 따른 편성규제 실효성 제고방안 및 해외사례 비교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된다. 첫째, OTT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규제 및 진흥 현황을 파악하고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 규제 혜택을 받는 지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OTT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적용의 현실성을 예측하고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편성규제가 제고해야할 사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현행 편성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쟁점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예를 들어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등 주요 편성규제가 안고 있는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규제 형평성과 방송 미디어의 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실효적 편성규제를 제안하고 향후 주목해야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OTT 서비스의 방송 생태계 진입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의 OTT 서비스 생태계 진입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전통적 방송미디어의 위기론이 촉발되었다. 실제로 넷플릭스, 웨이브(wavve) 등 국내외 OTT 서비스의 활성화는 정형화된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핵심 시스템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여건, 방송 프로그램의 거래 환경,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 융합 등 다양한 분야의 고착화된 시스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시스템의 변화는 이에 기반해 수립된 현행 편성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편성규제는 과거 지상파 방송사업자 독과점체제 등 기존 방송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구축,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편성규제는 방송채널 증가, OTT 서비스 활성화에

기인한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수반한다.

OTT 서비스 등 신유형 유사 방송서비스가 촉발한 방송 생태계의 다변화와 그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편성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송미디어의 환경변화에 따른 편성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국내 및 해외 OTT 규제 현황)에서는 국내 OTT 서비스 규제 현황 및 해외 주요국의 OTT 규제 및 진흥 현황을 소개한다.

제3장(주요 편성규제 현황)에서는 편성규제 항목별 법령 및 고시 현황과 그간의 법령 및 고시 개정 연혁을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신규편성 총량제 등),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의무편성, 분야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의무편성 제한이 포함된다.

제4장(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편성 비율 제한의 쟁점·개선방향 검토)에서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관련 오락 편성 비율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반 논의 및 검토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의 쟁점·개선방향 검토)에서는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전체 방송시간 기준 의무편성과 주시청시간대 기준 의무편성) 관련 쟁점·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반 검토 결과를 소개한다.

제6장(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제도의 쟁점·개선방향 검토)에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제도(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와 애니메이션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관련 쟁점·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반 검토 결과를 소개한다.

제7장(기타 편성규제 항목별 쟁점·개선방향 검토)에서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및 분야별(애니메이션 제외)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분야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제한에 대해 각각 관련 쟁점·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반 검토결과를 소개한다.

제8장(결론: 편성규제 항목별 개선방향 제안)에서는 제3장~제7장에서 소개한 편성규제 항목별 규제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방송 내외 환경의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여, 편성규제의 주요 범주별로 실효성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안건으로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제한 규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 규제(신규편성 총량제 포함),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규제,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제, 분야별 해외 수입물 1개 국가 제작물 편성규제 등이 포함되었다.

첫째, 현행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드라마·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자의 규제 준수비용을 낮추고 편성의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편성비율의 산정기간을 현행 ‘매월’에서 ‘매반기’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둘째,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선 주시청시간대의 순수외주제작물 편성시간의 110% 인정대상 프로그램의 범위를 교양 분야에서 드라마를 포함한 모든 분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플랫폼의 다양화 및 시청행태 변화, 이중규제(전체 방송시간대 비율, 주시청시청시간대 비율)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권 저해, 주시청시간대 의무편성비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규정의 폐지를 검토했다. 그리고 연구진은 순수외주제작 규제에 따른 과도한 수중계 의존, 지역방송의 어려운 경영상황 및 열악한 외주제작 환경, 지역방송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방송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제도를 검토한 결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상 변화, 애니메이션 시청경로 및 시청방식의 다변화, 규제 중복 가능성(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 신규 의무 편성), 편성권 저해,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도 현행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비율을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주무부처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 협의에 기초하여 유관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 밖에 전문 편성채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규제, 해외 수입물 중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의 개선, 지상파DMB에 관한 편성규제, 그리고 앞서 논의한 편성규제에 제각각 부과되던 산정기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가 제시하는 편성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은 현행 편성규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OTT 서비스 등 신규 유사 방송서비스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고려함으로써 향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선제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6. 기대효과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OTT 서비스 등 유사 방송서비스가 기존 편성규제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의 검토는 신규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 규제 형평성의 확보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방송 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편성규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1 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OTT 서비스의 방송 생태계 진입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의 OTT 서비스 생태계 진입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전통적 방송미디어의 위기론이 촉발되었다. 실제로 넷플릭스, 웨이브(wavve) 등 국내외 OTT 서비스의 활성화는 정형화된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핵심 시스템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여건, 방송 프로그램의 거래 환경,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 융합 등 다양한 분야의 고착화된 시스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시스템의 변화는 이에 기반해 수립된 현행 편성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편성규제는 과거 지상파 방송사업자 독과점체제 등 기존 방송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구축,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편성규제는 방송채널 증가, OTT 서비스 활성화에 기인한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수반한다.

현행 편성규제의 실효성 저하는 방송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에게 적용되는 규제 형평성 문제와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여기에 국내 전통 방송사업자의 시장내 경쟁력까지 약화된 상황에서, OTT 서비스 유입 등에 따른 시장변화에 현행 편성규제의 경직성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능동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방송 산업 위기를 가속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현행 편성규제의 여러 항목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따른 규제의 개선 지점들이 발견된다.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제한으로 인해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드라마·예능 등 오락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방송사업자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상대적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 또한 편성규제에서 자유로운 OTT 서비스와는 달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 부과되는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제약은 PP의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방송사업자가 OTT 서비스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OTT 서비스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현 프로그램 제작시장에 높은 프로그램 제작비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생산요소와 저작권 등을 확보하면서 국내 전통 방송사업자의 제작 저변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전통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노출의 1차 창구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청자의 주목을 끄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야 하나, 국내 전통 방송사업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처럼 상당한 제작비의 지속적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듯 국내 콘텐츠 제작 자원이 글로벌 OTT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 시 글로벌 OTT 서비스는 전통 방송사업자에 비해 내용심의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OTT 서비스는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해외방영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요컨대, 현행 편성규제는 OTT 서비스가 촉발한 방송 생태계의 다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력,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 매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중편PP) 간 동일규제 적용 등 매체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방송미디어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유연한 편성정책 방향을 요구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된다. 첫째, OTT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규제 및 진흥 현황을 파악하고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 규제 혜택을 받고 있는 지점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OTT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적용의 현실성을 예측하고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편성규제가 제고해야할 지점을 파악한다. 둘째, 현행 편성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쟁점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예를 들어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등 주요 편성규제가 안고 있는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규제 형평성과 방송 미디어의 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실효적 편성규제를 제안하고 향후 주목해야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전술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1) OTT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2) 편성규제와 관련해서 항목별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쟁점을 진단한다. (3) 문제점 식별 및 관련 쟁점 분석을 통해 규제 개선안을 도출하고, (4) 개선안에 관한 학계 및 이해관계자의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 또는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2. 연구방법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KISDI 연구진(이하 연구진)과 외부 학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편성규제개선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 및 운영한다. 방송학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편성규제 항목별 쟁점과 문제점을 공유, 분석하고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거쳐 개선안에 대한 수정안 또는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연구반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편성규제 개선안(또는 수정안)에 대해 방송협회, 독립제작사협회, 애니메이션제작협회, PP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보완한다. 아울러 연구반 운영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 시민단체 등 관련 업계와 협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안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제 2 장 국내 및 해외 OTT 서비스 규제 현황

제 1 절 국내 OTT 서비스 규제 동향

1. 국내 법체계 현황

국내 방송법 체계는 전송망을 기준으로 방송, 통신 등 대상을 구분하고 각 규제를 차별화하고 있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등 방송망 서비스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규율하는 한편, 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는 기간통신업무와 부가통신업무 등 전기통신업무로 정의하고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방송과 통신은 기술적 차이와 보호법익의 차이에 기초해 엄격하게 구분하여 수직적 규제체계를 적용해왔다.

이러한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서비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된다.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상 허가, 승인, 등록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과는 달리 OTT 서비스 사업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대상이며 그 외에 별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콘텐츠 측면에서 OTT 서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심의규정, 영화비디오법 등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규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마찬가지로 불법정보, 청소년유해물, 음란 불법 정보를 취급하거나 표시할 때 제재가 가해진다. 반면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행정지도나 법정제재가 부과되고 벌점 병과로 면허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등 방송법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규제를 받고 있다.

운영적 측면에서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는 시청점유율 규제, 경쟁상황평가 자료제출의무, 이용약관 승인 및 신고제, 각종 소유겸영규제는 OTT 서비스 사업자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제작물, 순수외주제작, 방송편성분야 등과 관련된 편성규제 또한 방

송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규제로 OTT 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발생하는 방송과 OTT 서비스간 규제 형평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점화됨에 따라, 그간 지상파방송 3사 중심으로 부과되어 온 국내 편성제도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김남두 외, 2019).

<표 2-1> 방송과 OTT 서비스의 법률 체계 비교

구분	방송	OTT 서비스
플랫폼 규제	• 방송법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콘텐츠 규제	• 방송법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자료: 최진웅(2019) 수정

2. 국내 OTT 서비스 규제 경과사항

OTT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 환경이 전환기를 맞음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능동적인 규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방송과 OTT 서비스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평규제 및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도입, 방송규제완화 등 인접매체 규제 개선, VOD 및 OTT 서비스 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이 두루 논의되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방송법상 법적 지위 부재로 인한 방송사업자와 OTT 서비스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문제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2019년 김성수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한 1차 방송법 전부개정안(2019. 1. 11.) 및 2차 개정안(2019. 7. 29.)은 전통적인 방송제도내 OTT 서비스를 포섭하기 위해 방송 관련 주요 개념을 역무기반으로 재분류하여 방송규제체계 틀을 수립하려는 사회적 논의에 마중물이 된 사례이다(<표 2-2>). 해당 법안은 기존의 방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와 같은

신규미디어 서비스를 별도의 미디어 서비스로 정의하고, 한국방송공사는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는 안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의 역무를 위해 신고한 사업자에 별도의 심의규정, 콘텐츠와 광고의 분리 규정을 도입하고, 약관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경쟁상황평가를 시행,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하고 시정명령 대상과 제재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표 2-2> 2019년 김성수 통합방송법안 1, 2차 발의안 사업자 분류

구분	기존 방송법	1차 통합방송법안(2019. 1. 11.)		2차 통합방송법안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성방송사업자	유료방송 사업자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부가유료방송사업자	
	－	방송콘텐츠 제공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콘텐츠 제공사업자
	－		인터넷방송콘텐츠 제공사업자	－
		－		

자료: 최진웅(2020)을 재구성함. 1차 통합방송법안은 2019년 1월 11일 김성수 의원 「방송법」 전부 개정안, 2차 통합방송법안은 이를 수정한 2019년 7월 29일 김성수 의원 「방송법」 전부 개정안을 의미함

또한 변재일 의원은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전통 방송사업자들의 광고매출이 축소되는 시장현황을 감안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10. 29.)을 대표 발의하였다. 해당 발의안은 OTT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6% 이내)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방송과 OTT 서비스의 규제 비대칭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다수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내 사업자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을 피하지 못했다(정두남·심영섭, 2020). 이들은 20대 국회회기 내 개정에 이르지 못하여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2020)에서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에 ‘유료

방송 규제 형평성 확보와 OTT 서비스 등 신규미디어 규제'가 수록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이전의 방송사업 규제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3> 제20대 국회의 통합방송법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대표발의 (발의일자)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 (2016. 6. 17.)	•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함 • 유료방송사업 개념 도입
김성수 의원 (2019. 7. 29.)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함 • 「한국방송공사법」을 제정하여 한국방송공사를 별도로 규제함 •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분류함 • OTT 서비스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분류함 • 공영방송사를 정의하여 공적 책임을 부과함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0) p.228 <표 28> 발췌

OTT 서비스 관련 정책적 결정에는 신산업의 성장과 경쟁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수수(SK텔레콤 운영)와 폭(지상파 방송3사 운영)의 결합 및 통합 OTT 서비스인 웨이브(Wave) 출시에 대해 내린 승인 결정에 경쟁 OTT 서비스에 대한 VOD 공급 중단을 금지하는 시정조치가 포함되었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두었으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콘텐츠 위상을 감안하여 OTT 서비스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 촉진책으로서 콘텐츠 동등접근권 보장 조건을 부과하였다고 설명했다(법률신문, 2019. 8. 22.).

2020년 6월 22일 정부는 '제 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국내 OTT 서비스의 발전 계획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9월 10일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범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같은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웨이브와 티빙, 왓챠,

시즌 등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들과 함께 OTT 서비스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현안 해결을 논의한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OTT 서비스 콘텐츠글로벌상생협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함으로써 OTT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11호)을 입법 예고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1년 1월 26일 현재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는 OTT 서비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금지원을 위한 단초로 해석된다(전자신문, 2020. 8. 31.).

과거 2016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는 VOD 서비스 등 선택형 유료방송상품에 대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유형 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한 바 있다(곽동균·정은진, 2018). 이후 정부는 그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 8월, 과기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최소채널 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해서만 승인제를 유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09호)하여 2020년 12월 기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여전히 국내의 OTT 서비스 규제 논의에는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 대비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차세대 사업부문의 성장지원 필요성, 방송미디어 공민영 구조 전반의 개편 필요성 등의 여러 난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 부처는 OTT 서비스에 대한 최소규율체계 마련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존규제 개선을 통해 점진적인 정책수립의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2 절 해외 OTT 서비스 규제 동향

1. 미국

미국은 OTT 서비스를 방송서비스와 구별하여 ‘정보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정보서비스는 인터넷서비스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실제로 진입절차 상 신고 의무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다만,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는 2012년부터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 보고서’에서 온라인 영상 공급자(Online Video Distributor, 이하 OVD)를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2014년 FCC는 OVD 서비스 중 정액 가입비를 받는 인터넷기반 실시간동영상서비스(linear streams of video programming)를 다채널유료방송(Multichannel Video Programing Distributor, 이하 MVPD)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MVPD 서비스 제공의 혁신 및 시장경쟁 진흥’ 시행령 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이하 NPRM)¹⁾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지만 후속 조치는 현재까지도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은 지상파, 라디오, 케이블, IPTV, 위성방송을 규율하고 있다. 통신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해 외국인 지분 취득을 제한하고 공익성 심사를 의무화(47 U.S.C. §310)하는 등의 소유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편성규제 측면에서는 FCC가 어린이 텔레비전법(The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0)에 근거하여 지상파 상업방송사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시간대에 연간 156시간 이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및 연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FCC는 형법(18 U.S.C. §1464)에 근거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음란물, 외설, 폭력성 콘텐츠 편성을 금지하는²⁾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용규제를 부과하고 준수결과를 방송면허 재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과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업자를 칭하는 MVPD에는 독점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규제, 지상파 방송 채널을 재송신(retransmission) 거래 관련 규제와 함께 최소 수준의 음란물 콘텐츠 금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온라인영상공급자(Online Video Distributor, OVD)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비즈니스 범주로만 의미를 지니고 있다. FCC는 2012년 경쟁상황 조사를 위해 기존 지상파나 MVPD 이외의 OTT 서비스 사업자를 별도의 범주인 OVD로 규정하였다. 이는 앞

1)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rovision of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Services>, MB Docket No. 14-261, NPRM, 29 FCC Rcd 15995 (2014)

2) 다만, FCC의 권한은 내용 검열이 아닌 규제 권한이기 때문에 외설 및 폭력성 콘텐츠에 대한 심사는 시청자, 시민단체, 경쟁방송사 등의 신고를 접수하면 개시된다.

서 언급한 연방통신법과 별도로 비디오 시장 경쟁 평가에 필요한 사업자 범주를 나눈데서 기인한다. FCC는 OVD에 대해 기존 방송의 보완재로 인식하는 기초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³⁾

2014년 12월 FCC는 실시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에 한하여 MVPD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시행령 개정안(NPRM)을 제안했다. 이는 ‘채널 제공’을 ‘물리적인 경로의 통제’로 해석했던 기존 입장을 완화하고 ‘선형 프로그램의 제공’만으로 MVPD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OTT 서비스, 즉 실시간 OVD는 vMVPD(virtual MVPD)로 규정되었다.⁴⁾ FCC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시간 OVD 사업자가 MVPD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지상파 네트워크와 재전송 동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규제를 부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듬해 2015년 FCC 위원장 Wheeler는 인터넷 동영상 시장의 혁신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전제 하에 개정안 시행을 속고 중임을 밝혔으며(Eggerton, J., 2015) 이후 FCC의 17차, 18차 MVPD 경쟁시장 연례보고서에서도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OTT 서비스 정책은 OTT 서비스 규제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실시간 OTT 서비스와 MVPD가 동일한 조건에서 서비스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에 방점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OTT 서비스의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내 미디어 사업자들의 형평성 요구를 수용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수평규제 원칙 준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2. 유럽연합

미국과 달리, 유럽은 미국 기반의 거대 OTT 서비스로부터 자국 산업 및 문화 보호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 OTT

3) 2019년 10월, FCC의 Ajit Pai 위원장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MVPD에 대해 “효과적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발표함으로써, OVD에 대한 규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4) 서비스 사업자가 사전 편성된 영상물을 IP망을 통해 제공되므로 실시간 서비스에 해당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 주문하는 Netflix, 아마존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비스 규제 정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7년 발표한 녹색⁵⁾을 통해 일찍이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의 개념과 수평적 규제체계 등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수평적 규제체계는 서비스를 전송계층과 콘텐츠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에 동일한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08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제정함으로써 전송계층에 관계없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로 이원화하고 진입, 내용 등에서 규제를 차별해왔다. 2008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규율대상범위를 편성 책임을 지닌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업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2018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안은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규율대상의 범위를 모든 방송사업자,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넷플릭스, 디즈니+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 완화책과 신규 미디어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그간 미디어 서비스의 규제 비대칭성을 교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럽연합은 주문형 서비스에 대하여 미성년자 보호, 소비자 보호 의무 수준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규제를 받지 않던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도 미성년자 보호, 증오 및 테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율하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산 제작물의 의무편성 쿼터제도를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서 주문형사업자로 확대적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OTT 서비스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 유럽산 콘텐츠를 최소 30% 제공해야하게 되었다.

반면 개정안에서 전통 미디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고규제 완화 조치는 주문형 서비스와의 경쟁에 직면한 유럽 방송사업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해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시간에 대한 광고시간 비율 규제를 일일총량제(07시부터 23시까지 총 시간의 20% 미만)로 전환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TV 영화, 스포츠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금지하였던 간접광고를 어린이 프로그램,

5) <Green Paper on the convergence of the telecommunications, media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s, and the implications for Regulation – Towards an information society approach> European Commission (1997. 12. 3.)

뉴스 등을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전면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제를 전폭 완화하였다.

유럽연합의 개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 방송사업자에 대한 대폭적 광고규제 완화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현행 정책은 매체별 비대칭규제가 가져오는 방송산업의 시장경쟁력 저해, 방송과 비방송영상서비스의 경쟁 심화, 유럽연합의 관할 밖에 위치한 글로벌 ICT기업과의 규제 차별 등을 고려하여 규제적합성과 규제의 단순화를 모색하고, 광고규제의 추가 완화 등을 통해 전통적 방송시장의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영국

영국은 2003년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계층별(Layer) 규제를 도입하였다.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수용함에 따라 2009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규정(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Regulations)을 처음 제정하고 2010년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s) 개정을 통해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On-Demand Programme Services, 이하 ODPS)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⁶⁾ 영국의 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Ofcom)이 규율하는 ODPS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방송사의 OTT 서비스, SVOD(Subscription VOD; 브릿박스 등), TVOD(Transactional VOD; Sky Store 등), 광고가 삽입된 무료 VOD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콘텐츠 검색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단순한 검색 엔진은 주문형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영국 내 자회사를 둔 해외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도 ODPS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2020년 연말 기준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신고되어 있다.

ODPS에 대한 규제는 TV와의 유사성(TV-likeness)에 근거하였으나 법적으로 방송과는

6) 영국은 민간협회이자 준자율규제기관인 ATVOD(Authority for Television On Demand Services)를 설립하여, 2010년 3월부터 Ofcom과 ATVOD의 ODPS 공동 규제 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규제 권위와 효율성 문제로 2016년 1월 1일부터 Ofcom이 ATVOD의 ODPS 등록 및 규제 권한을 회수했다.

구별되며, 규제 의무 역시 상이하다. 커뮤니케이션법에서 통신 및 주파수는 Part2에, 방송은 Part3과 Part4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OPDS 관련 규정은 커뮤니케이션법 Part4A에 신설되었으며, Part3에서 방송시장의 공정성과 경쟁 환경 확보를 위해 부여되는 규정은 Part4A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라 ODPS 범주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OFCOM에 신고한 후 신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ODPS는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른 콘텐츠 보유 의무, 증오유발 내용 포함 금지규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1)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는 유해 내용 금지(368E, Harmful material), 광고 규제(368F, Advertising), 협찬규제(368G, Sponsorship), 간접광고규제(368H, Prohibition of product placement and exceptions)를 준수하고 (2)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업자 이름, 사업자 소재지, 홈페이지, 사업자 혹은 사업자의 서비스 규제당국의 이름,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제공해야하며, (3)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는 규제 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368O, power to demand information). 여기서 유해한 내용(368E, Harmful material)이란 (1) 인종, 성별, 종교, 국적에 대한 증오를 유발하거나, (2) 18세 미만에게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전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국은 OPDS에 대한 규제가 PSB나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강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 ODPS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영국은 OTT 서비스에 대한 규율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의 내무부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이하 DCMS)는 2019년 온라인 유해콘텐츠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를 발간하여 증오표현 규제 등 온라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후속적으로 2021년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도입하고 Ofcom에 온라인 플랫폼의 유해콘텐츠 규제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최신 유럽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영국의 DCMS는 2020년 11월 1일 시청각미디어규정(Audiovisual Media Services Regulations)을 개정, 발효했다. 이 지침에 따라 Ofcom은 영국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와 공동으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VSP)에 대한 규제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았다. 2020년 11월 23일 현재 유럽집행위원회가 영국을 포함한 23개 국가에 2개월 내 유럽 시청

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현지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함에 따라 추가적인 법제 논의도 예상되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커뮤니케이션자유법에 따라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에 대해 전체 방송 송출시간 중 최소 60% 이상을 유럽산 제작물로 편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지침보다 강도 높은 편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각 방송사업자의 연매출 약 3.2%를, PSB 방송사의 경우 약 3.5%를 유럽산 영화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프랑스의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2010년 11월 12일 제2010-1379호 법규명령(Décret n°2010-1379 du 12 novembre 2010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동법에 의하여 주문형 서비스에도 유럽산 제작물 및 제작비 의무투자 비율이 부과되고 있다. 주문형 서비스는 전체 작품/에피소드 개수의 60%이상을 유럽산 제작물로, 40%이상은 프랑스어 제작물로 구성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주문형 서비스는 매년 전 회계 연도의 순 연간 매출액의 일부를 유럽영화 작품의 제작 개발에 기여하는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며, 구독기반 서비스는 매년 전 회계 연도의 순 연간 매출액의 일부를 유럽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의 제작 개발에 기여하는 지출에 투자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 제공자는 항상 유럽 작품 또는 프랑스 원작 작품, 특히, 영상 전시 및 예고편 제공을 통해 노출을 보장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프랑스국립영화센터(CNC)를 통해 프랑스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금납부 의무대상자 또한 전통 방송사업자에서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프랑스 현지 VOD 사이트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해외 동영상서비스사(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⁷⁾에도 구독 매출 및 광고 수익 2%의 세금을 징수하여 CNC 기금에 교부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처럼 프랑스는 방송사업자 규모, 전문채널별로 차등화하여 유럽산 및 프랑스어 제작

7) 페이스북, 트위터는 동영상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판단, 세금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물 편성비율과 제작비 의무투자비율이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 전부터 주문형 OTT 서비스에도 편성규제와 제작비 투자 의무, 조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프랑스가 문화적 다양성을 방송산업을 포함한 모든 문화정책의 기조가치로 정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 3 장 주요 편성규제 현황

제 1 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편성비율 제한

1. 법령 및 고시 현황

방송법에서는 ‘종합편성’을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의하며(제2조 제18호), 이를 구현하기 위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과다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한하고 있다(김남두 외, 2019).

방송법에서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69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텔레비전·라디오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오락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로 편성해야 한다. 단, 데이터 방송채널(이하 데이터)인 경우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서는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으로,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2006년 10월 27일 개정 이후 방송법에도 ‘보도’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어, 방송법상 보도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방송법 제2조 제24호).

2. 규제 연혁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조화로운 편성’ 관련 규제는 1963년 방송법 제정 당시 관련 규정이 존재하였다. 1973년부터 보도·교양·오락의 3개 범주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이 규정된 바 있다(김남두·박병선, 2013, 32-33쪽). 1963년 방송법 제정 당시 “보도, 교육 및 교양, 오락, 광고 및 기타 분야의 균형 잡힌 편성”을 규정하였고, 1973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보도(10% 이상), 교양(30% 이상), 오락(20% 이상)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하였다. 2000년 통합방송법 시행령에서부터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무편성 비율(20% 이상)이 아닌 편성 최대 허용비율(50% 이하)로 전환하였다(주창윤·황성연·유승현, 2012).

2001·2004년에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이 폐지되었으며, 현행 법령에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제한만 존속하고 있다. 저녁 뉴스 등이 방송사업자의 시청률 및 공적 역할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보장된다는 평가에 따라, 2001년 3월 20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보도 10% 이상 편성 규정이 폐지되었다. 또한 2004년 9월 17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교양 30% 이상 편성 규정을 폐지하고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50% 이하)만 존속함으로써 교양·보도의 편성 비율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확보하여 프로그램 균형성 및 시청자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주창윤 외, 2012, 10-12쪽).

<표 3-1>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의 변화(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구분	대상	2000년	2001년	2004년~현재	산정기준
보도/교양/ 오락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보도: 10% ↑ 교육: 30% ↑ 오락: 50% ↓	교양: 30% ↑ 오락: 50% ↓	오락: (TV/R) 50% ↓ (테이터) 60% ↓	전체 방송시간 (매월)
시행령 개정일		2000. 3. 13.	2001. 3. 20.	2004. 9. 17.	

자료: 성육제 외(2008), <표 1-2>, 21쪽, 표 내용 일부 수정

제 2 절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1. 법령 및 고시 현황

방송법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현재 (1)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전체 방송시간 기준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이, 그리고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주시청시간대 기준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이 적용된다(방송법 제72조 제1항·제3항). 여기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이란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방송법 제72조 제1항)을 의미한다(김남두 외, 2019).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1)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지상파 PP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35%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주시청시간대⁸⁾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매 반기 15%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제3항).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고시)에서는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 반기 KBS 1TV는 전체 방송시간의 19% 이상, KBS 2TV는 35% 이상, MBC 및 지역 MBC는 30%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SBS)는 30% 이상, EBS 채널은 16% 이상, 이 외의 지상파 방송사업자(SBS를 제외한 지역민방 채널 등)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2% 이상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편성고시 제9조 제1항). 주시청시간대 기준비율의 경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⁹⁾의 채널은 매 반기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을 순수외주제작 프로

8) 주시청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오후 7시~오후 11시 시간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오후 6시~오후 11시 시간대(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를 의미한다.

9) 2018년 12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과 2019년 6월 개정된 편성고시(제2019-6호)에 따라, 종편PP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의거해 전체 방송시간 기준의 의무편성 비율(30%) 및 주시청시간대 기준의 의무편성 비율(10%)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편성고시 제9조 제2항).¹⁰⁾

<표 3-2> 방송사업자 유형별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구분	지상파	종합PP	지상파PP
전체 방송시간대 (매 반기)	19%↑ (KBS1)	30%↑	3.2%↑ :시행유예 (고시부칙 2008-135)
	35%↑ (KBS2)		
	30%↑ (MBC/지역MBC/SBS)		
	16%↑ (EBS)		
	3.2%↑ (기타 지상파사업자)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 (매 반기)	10%↑ (종합편성)	10%↑	3%↑ :시행유예 (고시부칙 2008-135)

자료: 심홍진·김창희(2019)

2. 규제 연혁

2015년 6월 22일 방송법 개정 이전까지는, (1)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전체 방송시간 기준)과 (2)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전체 방송시간 기준), 그리고 (3)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이 적용되었다(김남두 외, 2019).

<표 3-3>은 2000년부터 외주제작 프로그램 관련 의무편성 및 편성제한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2005년 개정된 편성고시 의무편성비율이 2015년까지 지속되었고, 2010년 편성비율의 적용기간이 매분기에서 매 반기로 변경, 고시되었다.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15년 6월 22일 방송법 개정과 함께 외주제작 프로그램 범위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축소되었으며,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규제가 폐지된 것이다.¹¹⁾ 이는

10) 지상파 종합편성 PP(실제 해당 사업자 부재)에 대해서도 주시청시간대 기준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3%가 적용된다.

외주제작 의무편성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도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결과이다.

2016년 5월 27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동년 10월 26일 편성고시 개정으로 방송사업자 및 채널별 의무편성 비율에 변화가 있었으며(<표 3-3> 참조), 2018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종편PP에 적용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종편PP는 전체 방송시간대 기준(30%) 및 주시청시간대 기준(10%)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 받게 되었다.

-
- 11) 2015년 6월 22일 개정 이전의 방송법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정의를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자회사 및 일반 독립제작사 등을 포함하여 외주제작 편성 비율을 계산한 대신, 편성고시에 특수관계자인 자회사 프로그램 비율은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21% 이하로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제9조2항)을 두었다.

<표 3-3> 외주제작 프로그램 관련 의무편성·편성제한 비율 추이

구분	대상	2000년 (매월)	2001년 (매월)	2002년 (매월)	2003년 (매월)	2005년 (매분기)	2016년 ¹⁾ (매반기)	2019년~ 현재 (매반기)
전체 방송 시간대, 외주 제작	KBS1	22%↑	9.30까지: 24%↑ 10.1부터: 26%↑	28%↑	30%↑	24%↑	순수외주 19%↑	순수외주 19%↑
	KBS2					40%↑	순수외주 35%↑	순수외주 35%↑
	EBS			20%↑	20%↑	20%↑	순수외주 16%↑	순수외주 16%↑
	MBC/지역 MBC, SBS	27%↑	9.30까지: 29%↑ 10.1부터: 31%↑	33%↑	35%↑	35%↑	순수외주 30%↑ ²⁾	순수외주 30%↑
	기타 지상파사업자	4%↑	4%↑	4%↑	4%↑	4%↑	순수외주 3.2%↑	순수외주 3.2%↑
	종편PP	—	—	—	—	—	—	순수외주 30%↑ ³⁾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18%↓	18%↓	20%↓	21%↓	21%↓	<삭제>	<삭제>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6%↑	8%↑	10%↑	10%↑	10%↑	순수외주 10%↑ (지상파)	순수외주 10%↑ (지상파, 종편PP)
고시일		2000. 5. 26.	2001. 3. 23.	2002. 4. 9.	2003. 1. 8.	2005. 1. 22.	2016. 10. 26.	2019. 6. 17.

주: 1) 2016년 10월 26일 고시 개정전,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21%를 초과하여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2) MBC와 SBS의 경우 편성고시 부칙 제2016-9호 제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17년까지는 35%이상,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32% 이상, 2020년부터 30% 이상의 비율을 적용한다.

3) 2019년 6월 17일 고시에 따른 종편PP의 순수외주 편성규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자료: 성육제 외(2008), 심홍진·김청희(2019, 2020 발간 예정)

제3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

1. 법령 및 고시 현황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 규정은 (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 규정과 (2) 애니메이션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정으로 구성된다. 두 규정은 편성 비율 산정 시, 각각 다른 모수로부터 비율이 산출된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연간 전체 방송시간을 모수로 삼아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 편성비율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애니메이션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을 모수로 삼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 편성비율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김남두 외, 2019).

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PP(이하 애니메이션 전문PP)에 대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동법의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71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KBS, MBC,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SBS)에 대해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1% 이상을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후단),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제외), 종편PP 및 애니메이션 전문PP(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PP)에 대해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1.5% 이하 범위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신규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김남두 외, 2019).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편성고시는 (1) 지상파방송 3사에 텔레비전 채널별로 매년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 EBS에게 0.3%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종편PP 및 애니메이션 전문PP에게 전년도 방송사업 매출액 수

준¹²⁾에 따라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0.3%~1% 이상 구간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편성고시 제4조 제1항~제5항).

<표 3-4>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비율

대상	지상파	지상파DMB	PP	산정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1%↑ (지상파방송 3사;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지역지상파방송사 업자 제외)	0.1%↑ : 시행유예 (고시부칙 2008-135)	0.3 ~ 1.0%↑ (종편PP)	전체 방송시간 (연간)
	0.3%↑ (EBS)		0.3 ~ 1.0%↑ (애니메이션 전문PP)	

자료: 심홍진·김창희(2019)

한편, 편성고시(제4조 제3항)는 지상파DMB사업자에게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0.1% 이상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이 유예되고 있다(편성고시 제2008-135호 부칙 제1조 제3항).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의 가중치는 2010년 12월 31일 개정된 편성고시(제2010-57호)에 입각해 신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¹³⁾에 편성할 경우 해당 편성시간을 150%로 인정한다(편성고시 제11조 제3항).

12) 종편PP는 전년도 방송 매출액 등급에 따라 최하 0.3%(500억 원 미만)에서 최고 1.0%(700억 원 이상)의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을 적용 받으며(편성고시 제4조 제4항 제1호~제4호), 전년도 기준 방송 매출액이 50억 원을 넘는 애니메이션 전문 PP는 전년도 방송 매출액 등급에 준하여 최하 0.3%(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에서 최고 1.0%(200억 원 이상)의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을 적용 받는다(편성고시 제4조 제5항 제1호~제4호).

13) 평일: 7시~9시, 17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7시30분~11시, 14시~20시, 이하 어린이시청 시간대(편성고시 제11조 제3항)

나. 애니메이션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국내제작물을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방송법 제71조 제2항),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편성할 의무가 있다.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중 30%~50%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종교 또는 교육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중 40% 이내 범위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김남두 외, 2019).

<표 3-5>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대상	지상파	지상파DMB	SO·위성·PP	산정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45%↑	35%↑	30%↑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연간)
	8%↑(EBS 등 교육전문채널)			
	4%↑(종교전문채널)			

자료: 심홍진·김정희(2019)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편성고시(제3조 제3항)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텔레비전 방송채널별로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 이상, 지상파 DMB 사업자는 자신의 채널에서 35% 이상, 그 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위성방송사업자, PP는 30% 이상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전문편성 채널(EBS 등)은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8% 이상, 종교 전문편성 채널은 4% 이상을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면 해당 편성시간을 150%로 인정하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편성고시 제11조 제2항).

2. 규제 연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 규정은 2004년 3월 22일 방송법 개정과 함께 지상파방송 3사 및 EBS 등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¹⁴⁾ 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 애니메이션 시청률 하락, 전문편성PP의 애니메이션 유통 영향력 증대로 2012년 1월 17일 방송법을 개정하여 종편PP와 애니메이션 전문PP¹⁵⁾로 규율 대상이 확대되었으며(콘텐츠진흥원, 2012),¹⁶⁾ 종편PP 및 애니메이션 전문PP는 전년도 방송 사업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구간¹⁷⁾을 두어 의무편성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표 3-6> 참조).

반면 애니메이션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관련 제도는 1998년 문화관광부(현 문체부)가 어린이·청소년 교육 및 문화정체성 보호와 국내만화영화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상파TV의 국산 만화영화 의무방영 비율 고시하며 도입되었다(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2000).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장르별(영화, 대중음악, 애니메이션) 국내 제작물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이상 편성하도록 제71조가 신설되었다. 또한 편성고시에서 KBS 및 MBC에 대해 40%, 기타 지상파 채널에 대해 35% 등의 의무편성 비율을 규정하였다. 이후 2001년 개정된 편성고시에서 교육 전문 편성 채널과 종교 전문편성 채널에 대해서는 의무편성 비율 4%를 부여하였다. 다만 2002년 개정된 편성고시에서 교육 전문편성 채널은 8%로 의무편성 비율이 상향 부여되었다.

한편, SO,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과 PP 채널¹⁸⁾에 대해서는 최초 40%를 부여하고 2011년에 35%를 한시적으로 적용했다가 2011년 12월 2일 재개정된 편성고시(제2011-51호)에서부터 30%로 의무편성 비율이 하향 부여되었다.¹⁹⁾

14) 방송법 시행령 개정(2004년 9월 17일), 편성고시(2005월 1월 22일) 개정을 거쳐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15)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 애니메이션 편성하는 PP

16) 방송법 시행령 개정, 편성고시 개정(2012년 7월 18일)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한다.

17) 0.3%~1.0%

18) 종교·교육 전문편성 채널 제외한다.

19)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표 3-6>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 비율의 변화

구분	대상	2000년	2001년	2002년	2005	2008	2011	2012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 편성 (전체 방송시간, 연간)	지상파 3사	-	-	-	1%↑	1%↑	1%↑	1%↑
	EBS	-	-	-	0.3%↑	0.3%↑	0.3%↑	0.3%↑
	지상파 DMB	-	-	-	0.1%↑ (유예)	0.1%↑ (유예)	0.1%↑ (유예)	0.1%↑ (유예)
	중편PP	-	-	-	-	-	-	0.3~1% ↑
	애니메이션 PP(≥50억)	-	-	-	-	-	-	0.3~1% ↑
국내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전체 애니 메이션 방송시간, 연간)	KBS, MBC	40%↑	45%↑	45%↑	45%↑	45%↑	45%↑	45%↑
	기타 지상파 (EBS 제외)	35%↑	42%↑		45%↑	45%↑	45%↑	45%↑
	지상파 DMB	-	-	-	35%↑	35%↑	35%↑	35%↑
	SO, PP, 위성	40%↑	40%↑	40%↑	35%↑	35%↑	30%↑	30%↑
	교육전문	-	4%↑	8%↑	8%↑	8%↑	8%↑	8%↑
	종교전문	-	4%↑	4%↑	4%↑	4%↑	4%↑	4%↑
고시일		2000. 5. 26.	2001. 3. 23.	2003. 1. 8.	2005. 1. 22.	2008. 12. 31.	2011. 12. 2.	2012. 7. 18.

주: 1) 애니메이션 PP는 전체 방송시간 중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이 50%를 넘으면서 전년도 방송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PP로 한정.

2)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편성고시는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

자료: 성육제 외(2008), 주성희·김청희(2017), 심홍진·김청희(2019)

제 4 절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1. 법령 및 고시 현황

방송법령과 고시에는 (1)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관련 규정, (2)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가.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프로그램 장르와 무관하게 당해 채널의 전체 텔레비전방

송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71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은 방통위가 고시할 수 있는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의 범위를 방송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PP은 당해 채널의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80% 범위 내에서, 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에는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40%~70% 범위 내에서, PP 채널에는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20%~50%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전체 방송시간 중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남두 외, 2019).

<표 3-7>에서 볼 수 있듯이, 편성고시는 방송사업자 유형별로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편성고시 제3조 제1항). 구체적으로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지상파방송 3사, 지역민방 등)은 매 반기 80%, 지상파 전문편성 채널(EBS 등)은 60%, 지상파 DMB와 지상파PP 채널은 60%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부여받고 있다(편성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제4호). 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은 50%, PP 채널은 40%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적용받고 있다(편성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 다만, 영화, 애니메이션, 또는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 채널(PP 채널 등)은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비율을 적용받는다(편성고시 제3조 제5항).

<표 3-7> 방송사업자 유형별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구분	지상파	지상파DMB · 지상파PP	SO· 위성	PP	산정기준
국내 제작 프로그램	80%↑ (종합편성)	60%↑	50%↑	40%↑ (단 외국문화 전문채널은 2013년말까지 30%↑)	전체 방송시간 (매 반기)
	60%↑ (전문편성)				

주: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전문 방송사업자는 분야별 기준을 적용함

2017~2018년 동안 외국문화를 주된 방송 분야로 하는 PP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29일 개정된 편성고시(제2016-15호) 부칙에 따라 의무편성 비율을 30%으로 낮춰 적용
자료: 성육제 외(2008)

한편, 2016년 12월 29일 개정된 편성고시(제2016-1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외국문화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PP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30%로 낮춰 적용하였으나, 2019년부터 해당 규정이 일몰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김남두 외, 2019).

나. 영화·대중음악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 편성²⁰⁾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은 방송법상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도의 일부에 속한다(김남두 외, 2019).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분야에서 각각 해당 분야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제작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71조 제2항).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사업자가 (1) 영화 분야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 중 20%~40%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국내 영화로 편성하여야 하고, (2) 대중음악 분야의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50%~80%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국내 대중음악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제3호). 다만, 종교 또는 교육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 중 40% 이하 범위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국내제작 영화로 편성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

편성고시는 <표 3-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자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편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 영화 분야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종교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며, (2)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편성고시 제3조 제2항·제4항). 영화 분야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상파 DMB 사업자 포함) 채널은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5%, SO, 위성방송사업자, PP 채널은 20%, 종교 전문편성 채널은 4%를 국내제작 영화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음악 분야의 경우, 모든 방송사업자 채널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내제작 대중음악²¹⁾ 의무편성 비율을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로 정하고 있다(김남두 외, 2019).

20) 애니메이션 분야는 앞서 소개했으므로 내용설명에서 제외함

21)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PP에 대해서는 편성비율을 채널 단위가 아닌 방송사업자 단위로 비율을 산정(편성고시 제3조 제4항 후단)

<표 3-8> 방송사업자 유형별 영화·대중음악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비율

구분	지상파	SO·위성·PP	산정기준
국내 제작 영화	25%⬆	20%⬆	분야별 전체 방송시간 (연간)
	4%⬆(종교전문편성 방송사업자)		
국내 제작 대중음악	전체 방송사업자 60%⬆		

자료: 성옥제 외(2008), <표 1-9> (28쪽)의 자료를 토대로 이후 변화 내역을 추가함

또한, 편성고시(제11조 제1항)는 영화 분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시 가중치 규정을 두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국내제작 영화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면 해당 편성시간을 150%로 인정한다.

2. 규제 연혁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표 3-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과 함께 편성고시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채널별 연간 전체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80%, 기타 방송사업자에 대해 50%로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부여하였다. 이후 SO,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지상파사업자와 그 외로 나누던 의무편성 비율을 세분화하기 위해 2004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05년 편성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의 분기별 차이가 크지 않음을 고려해 2012년 2월 23일 편성고시 개정 이후부터 분기에서 반기로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해오고 있다(주성희·이주영, 2016). 방송사업자별 차등화된 현행 의무편성 비율²²⁾은 2014년 개정된 편성고시에서부터 적용하고 있다.

국내 영화의 의무편성 비율은 2000년 편성고시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채널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5%, 기타 방송사업자에 대해 30%로 규정하였으며, 2001년 개정된 편성고시에서 종교 전문편성 채널에 대해 특별히 완화된 의무 편성비율, 4%를 적용하였고, 2011년 개정된 편성고시²³⁾에서부터 현행 의무편성 비율²⁴⁾을 적용하고 있다(김남두 외, 2019).

22)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80%, 지상파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60%, SO와 위성방송 사업자에 50%, PP에 40%

<표 3-9>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대중음악의 의무편성 비율 변화

구분	대상	2000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11년	2014년 ~현재
국내 제작 프로 그램	지상파	80%↑ (분기)	80%↑ (분기)	EBS: 70%↑ 그 외: 80%↑ (분기)	EBS: 70%↑ 그 외: 80%↑ (분기)	EBS: 70%↑ 그 외: 80%↑ (분기)	전문편성: 60%↑ 종합편성: 80%↑ (반기)
						지상파방송 3사 DMB: 80%↑ 기타 DMB: 60%↑ (분기)	지상파 DMB 60%↑ (반기)
						지상파PP: 60%↑ (분기)	지상파PP: 60%↑ (반기)
	지상파 외	50%↑ (분기)	50%↑ (분기)	50%↑ (분기)	SO/위성: 50%↑ PP: 40%↑ (분기)	SO/위성: 50%↑ PP: 40%↑ (분기)	SO/위성: 50%↑ PP: 40%↑ (반기)
국내 영화	지상파	25%↑ (연간)	25%↑ (연간)	25%↑ (연간)	25%↑ (연간)	25%↑ (연간)	25%↑ (연간)
	지상파 외	30%↑ (연간)	30%↑ (연간)	30%↑ (연간)		SO/위성/PP 20%↑ (연간)	20%↑ (연간)
	종교 채널	-	4%↑ (연간)	4%↑ (연간)	4%↑ (연간)	4%↑ (연간)	4%↑ (연간)
국내 대중 음악	지상파	55%↑ (연간)	60%↑ (연간)	60%↑ (연간)	60%↑ (연간)	60%↑ (연간)	60%↑ (연간)
	지상파 외	60%↑ (연간)					
고시일		2000. 5. 26.	2001. 3. 23.	2002. 4. 9.	2005. 1. 22.	2011. 12. 2.	2014. 6. 5.

주: 1) 2002년 4월 9일 개정된 편성고시부터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국내 영화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면 편성시간의 150%를 인정함

2)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편성고시는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됨

3) 2012년 2월 23일 개정된 편성고시부터 국내제작프로그램의 산정기준을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 시행됨(편성고시 2012-11)

자료: 성육제 외(2008), <표 1-7>(25쪽), <표 1-9>(27쪽)를 토대로, 이후 변화 내역을 추가함

23)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

24) 지상파 방송사업자 25%, 기타 방송사업자 20%

국내 대중음악의 의무편성비율은 2000년 편성고시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 채널에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55%, 기타 방송사업자 채널에 60%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2001년 개정된 편성고시에서 모든 방송사업자 채널에 대해 60%의 의무편성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제 5 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1. 법령 및 고시 현황

방송법은 <표 3-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문편성²⁵⁾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주된 방송분야의 의무편성 및 부수적 편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주된 방송분야로서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된 분야를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방송법 제69조 제4항). 해당 방송사업자는 또한 부수적으로 편성(이하 부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방송법 제69조 제5항).

<표 3-10>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유형별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

구분	지상파	SO·위성	PP	산정기준
전문편성 中 주된 분야	60%↑	70%↑	80%↑	전체 방송시간 (매월)
	60%↑(데이터)			

자료: 심홍진·김청희(2019)

방송법 시행령은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가운데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70% 이상, PP에게 80% 이상을 주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25) 전문편성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미함(방송법 제2조 제19호)

한편, 방송법 시행령은 전문편성 방송사업자²⁶⁾가 부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교양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2. 규제 연혁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은 <표 3-1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공급분야 등록제로 전환되며 방송법 제69조에서 ‘전문편성’ 및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범주를 신설한 후, 2001년 방송법 시행령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후 동법 시행령 개정²⁷⁾으로 한 차례 의무편성 비율을 개정하였다. 2004년 9월 매체별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을 세분하여 지상파 60%,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70% 등으로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표 3-11>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유형별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의 변화

구분	대상	2001년	2004년~현재	산정기준
주된 방송분야	지상파	50%↑	60%↑	전체 방송시간 (매월)
	지상파 외	80%↑	SO/위성: 70%↑ PP: 80%↑ 데이터: 60%↑	
시행령 개정일		2001. 3. 20.	2004. 9. 17.	

자료: 성육제 외(2008), <표 1-4>, 22쪽, 표 내용 일부 수정

지상파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의무편성 비율²⁸⁾이 부과되어 온 것은 지상파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대부분이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로서 통합 방송법 제정 이전에는 ‘특수방송’으로 허가·재허가를 받아온 사정이 참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남두·우혜진, 2015, 90쪽).

26) 공공채널,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의 대한민국 관련 정보 제공 채널 등 과기부 및 방통위에서 고시하는 채널은 예외로 함(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27) 2004년 9월 17일 시행령 개정

28) 2001년 50% 이상, 2004년부터 60% 이상

2006년 10월 27일에 개정된 방송법은 무분별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부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를 동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방송법 제69조 제4항)(성육제·박민성, 2011, p.131). 이후 2007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교양과 오락 분야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다만, 예외적으로 보도를 부편성할 수 있는 채널(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채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을 과기부 및 방통위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 6 절 분야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1. 법령 및 고시 현황

방송법은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이 동법의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방송법 제71조 제4항),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매반기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의 편성 최대 허용비율을 80% 이내 범위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제6항).

편성고시에서는 <표 3-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에게 매반기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의 편성 최대 허용비율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80%로 일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매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편성고시 제8조).

<표 3-12> 방송사업자 유형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제한

산정대상	방송사업자	산정기준
1개 국가 제작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대중음악	분야별 전체 수입물의 80%↓	분야별 전체 외국 수입물 방송시간 (매 반기)

자료: 심홍진·김청희(2019)

2. 규제 연혁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분야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표 3-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2000년 방송법 시행령, 2001년 편성고시).

<표 3-13>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제한의 변화

구분	2001년 (매월)	2005년 (매분기)	2010년 (매반기)	2011년~현재 (매반기)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60%↓ (2002. 1. 1부터)	60%↓	60%↓	80%↓ (한미 FTA 발효일부터)
고시일	2001. 3. 23.	2005. 1. 22.	2010. 12. 31.	2011. 12. 2.

주: 1)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편성고시는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됨
 2) 2014년 6월 5일 개정된 편성고시(제2014-6호)부터, 분야별 해외 수입물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자료: 성육제 외(2008), <표 1-10>, 29쪽의 자료를 토대로 이후 변화 내용을 추가함

이후 편성고시 개정을 통해 1개 국가 제작물의 편성 최대 허용비율을 상향하고(60% → 80%) 적용 기간을 넓히는(월 → 분기 → 반기) 규제 경감 조치가 이루어졌다(김남두 외, 2019). 다시 말해, 2001년 편성고시에서는 매월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의 편성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규정하였으나, 편성고시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이 매월에서 매분기(2005년), 다시 매반기(2010년)로 변경되었다. 이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방송서비스의 부분개방을 위해, 2011년 12월 2일 편성고시 개정(제2011-51호)을 통해 편성 최대허용비율이 80%로

상향됐으며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김남두 외, 2019).

다만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 규정으로 인해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업자가 외국물을 편성하는 경우 규제를 어기기 쉬워 외국물 편성을 꺼리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방통위 2014. 3. 7. 전체회의), 2014년 6월 5일 편성고시 개정(제 2014-6호)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는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제한을 면제하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제 4 장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편성비율 제한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편성규제는 여러 선행연구(예: 성욱제 외, 2008; 주성희·이주영, 2016; 주성희·김창희, 2017; 김남두 외, 2019 등)를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기존 연구들은 현행 편성규제의 각 항목에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편성규제의 쟁점과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중복, 축적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가 밝힌 쟁점과 문제점이 현 시점에서 정책 개선에 유의미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사업자간 이해관계, 갈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특별히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선행연구가 제기한 쟁점과 문제점은 현 시점에서도 정책 개선에 유의미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쟁점과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본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 새로이 쟁점화 되는 사안들을 추가함으로써 정책개선의 출발 지점을 규정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쳐 편성규제의 개선안을 항목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연구진²⁹⁾이 현행 편성규제와 맞물려 있는 쟁점과 문제점을 기존 연구로부터 검토 후, (2) 해당 쟁점 및 문제점과 관련한 문헌 연구를 거쳐, (3) 해당 사안들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자문 또는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4) 연구반³⁰⁾에서 규제 개선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29) KISDI 연구진을 ‘연구진’으로 지칭한다.

30) 연구반은 학계(방송/법률 분야)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제1절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방송법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편성에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도록 규정하며(방송법 제69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은 매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매월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김남두 외, 2019).³¹⁾ 방송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은 각 장르를 세분화 해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을 “국민의 교양 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을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기한 장르별 분류 기준으로 인하여 4가지의 쟁점이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둘러싸고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첫 번째 핵심 쟁점은 방송 콘텐츠의 장르 혼합과 혼종, 융합 현상의 심화이다. 이로 말미암아 전통적 분류 기준이었던 보도·교양·오락 등의 3분류 체계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해당 규제의 적용 범위 또한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교양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의 구분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교양 프로그램의 속성과 오락 프로그램의 속성을 동시에 담고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가름하는 기준이 모호해 오락, 교양 등 특정 장르로 분류하기 곤란한 상황에 봉착한다.³²⁾ 선행연구(김남두 외, 2019)도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 ‘국민의 교양 향상 및 교육’과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에 모두 기여하는 성격이 있을 때 어느 쪽의 성격이 해당 프로그램에 더욱 부합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31) 단, 종합편성 채널 중 데이터 채널에 대해서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매월 60% 이하로 제한한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32) 주창윤·황성연·최명일(2004)에 따르면 방송에서 장르 혼합 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출현하였으며,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와 버라이어티 쇼, 정보와 오락이 혼합된 ‘인포테인먼트’, 교육과 오락이 혼합된 ‘에듀테인먼트’가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유형 분류에 어려움이 커지게 되었다.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포맷의 진화 또는 방송사업자의 새로운 장르 개척의 결과가 규제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오락 프로그램이 왜 ‘덜 공익적’인 콘텐츠인가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근원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방송법령³³⁾에서조차 오락 프로그램이 지니는 긍정적 성격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락 프로그램이 덜 공익적이라는 인식은 오락 프로그램 비율 제한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오히려 오락성이 프로그램 품질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해 오락 프로그램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용자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다양해지고 OTT 서비스 등 각종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함으로써 수많은 오락 콘텐츠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김남두 외, 2019). 이러한 미디어 이용 환경으로 인해 대다수의 이용자는 오락 콘텐츠를 활용할 때에 이용자의 취향과 선호에 적합한 오락 콘텐츠를 소비할 뿐, 특별히 국내외 콘텐츠를 구분하지 않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규제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와 글로벌 OTT 서비스 간 경쟁 시,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한류 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드라마·예능 등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편성규제의 제한을 받는 데에 반해,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는 해당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오락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해당 편성규제는 월 단위로 의무편성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편성의 유연성을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김남두 외, 2019).³⁴⁾ 여타 편성규제가 연간, 매 반기, 매 분기 단위로 편성비율을 산정해 편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담보하는 것에 비해 해당 편성규제의 월 단위 산정기간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게다가 현행 편성규제 중에서 월 단위로 의무편성 비율을 적용하는 규제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

33) 방송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은 오락 프로그램을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34) 이와 관련하여, 이원우 외(2010, 67-68쪽)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비율 산정 주기를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을 제한과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뿐이다(김남두 외, 2019).

제2절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상술한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에 관한 산재한 문제점들을 연구진은 연구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현행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진이 연구반에 제시한 개선안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해야하는 현행 규제에서 전체 방송시간의 60%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확대하는 안이었다. 두 번째 개선안은 방송사업자가 산정기간의 운영의 묘를 살려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매월’ 단위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로 확대하여 편성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안이었다.

연구반의 논의 결과는 예상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일부 연구반 전문가는 큰 틀에서 장르 3분류법(보도, 교양, 오락)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장르 3분류법에 대한 규제 개선은 상당한 시간과 기회비용을 요구하므로 단기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규제를 완화해 해당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그간 매월단위의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규제의 경직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였다. 연구반 전문가는 규제 경직의 부작용으로써 방송사업자가 계절별 또는 계기별 특성을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면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를 반기별 산정으로 개정한다면 산정기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할 수 있는 개선안이라는 평가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방송법에 적시된 방송 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안이라는 의견이었다. 연구반은 개선안 대로 추진된다면, 방송법 제4조³⁵⁾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고, 방송사가 편성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일부 협단체를 제외한 이해관계자들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당 개선안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35)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참조

연구반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오락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반 전문가는 장르 3분류 중 보도 장르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만 존속한 채, 오락에 대한 편성규제는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오락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6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은 방송사업자가 다양한 장르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오락 장르 편성 비율의 10%p 확대로 규제 대상 방송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장르 간 혼합 현상이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편성규제를 우회하여 오락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10%p 확대라는 편성규제는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이를 통한 정서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오인 받을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편성 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분기별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방송사업자의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고 편성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오락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완화하는 데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전문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상향하기보다 산정기간을 현행 ‘매월’에서 ‘매 반기’ 또는 ‘연간’으로 조정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 5 장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의 쟁점 및 개선 방향

제 1 절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는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2) 매반기 주시청시간대³⁶⁾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과 편성고시에 따라 해당 규제의 규율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방송 시간 기준³⁷⁾ 의무편성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며, (2) 주시청시간대 기준 의무편성 대상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³⁸⁾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김남두 외, 2019). 2020년 현재 KBS, MBC(지역MBC), SBS,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체 방송시간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³⁹⁾은 KBS 1TV는 19% 이상, KBS 2TV는 35% 이상, MBC 및 지역 MBC⁴⁰⁾는 30% 이상, SBS는 30% 이상, EBS는 16% 이상, 지역민방 3.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⁴¹⁾은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

36) 주시청시간대: 평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시간대(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37) 방송법 제72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편성고시 제9조제1항

38) 전문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

39) MBC와 SBS 채널에 대해서는 2016년 개정된 편성고시 부칙(제2조 제1항·제2항)에 따라 2017년에는 35%, 2018~19년에는 32%의 전체 방송시간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이 적용되었다.

40) 지역MBC의 경우, 편성고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0%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하여야 함, 구체적 조항 내용은 부록 내 편성고시 참조

41) 편성고시 제9조제2항, 구체적 조항 내용은 부록 내 편성고시 참조

사업자⁴²⁾ 공히 10%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부여받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규율 환경 아래, 다음과 같은 다수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주시청시간대를 기준으로 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최근 4년간 KBS 1TV 채널⁴³⁾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3개 채널(KBS 2TV, MBC, SBS)과 종편PP 4개 채널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10%를 훌쩍 넘어서 50%⁴⁴⁾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의무비율 이상으로 충분히 편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외주제작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제작하는 드라마 부문을 주시청시간대에 집중 편성하는 등 외주제작시스템의 정착이나 방송사업자의 편성 전략 또는 편성 구조에 따른 산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의무편성 비율을 굳이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원리와 제작 및 편성 구조에 따라 의무편성 비율 이상을 충분히 상회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해당 규제의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방송사업자도 전체 방송시간 기준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에다 주시청시간대 의무편성 비율까지 준수해야하는 이중규제 아래에서 편성의 자율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할 여지가 있다.

42) 다만, 지역민방과 지역MBC 또한 편성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주시청시간대에 10% 비율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의무편성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자들은 주시청 시간대에 수중계 편성을 통해 해당 의무편성 비율을 무리 없이 충족할 수 있어 규제 준수의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석할 수 있다.

43) KBS 1TV 채널은 외주제작으로 제작되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매우 낮다는 특수성이 있어, 채널 목록에서 제외한다.

44) 종편PP 4개 채널의 의무편성 1개년(2019년) 평균 비율은 47.7%로 나타난다.

<표 5-1> 지상파방송 3사/종편PP 4사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2019년)

구 분	의무비율	2016	2017	2018 ⁴⁵⁾	2019
KBS1	10%↑	22.9%	24.3%	23.4%	19.6%
KBS2		63.3%	54.3%	49.0%	52.8%
MBC		50.4%	54.9%	40.0%	57.2%
SBS		47.9%	41.4%	34.1%	38.0%
JTBC		—	—	—	27.3%
TV조선		—	—	—	53.1%
채널A		—	—	—	49.5%
MBN		—	—	—	61.1%

자료: 심홍진·김정희(2017~2020년), 『방송평가 기반조성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재구성

둘째, 현행 순수외주제작 편성의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드라마 부문에서 만큼은 외주제작 편성규제 도입의 주된 목표였던 독립제작사 육성 및 방송 제작원의 다양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현실에서 순수외주제작 편성의 과도한 규율은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위시한 방송사업자의 콘텐츠(드라마 부문) 자체제작 역량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는 더불어 방송미디어 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특별히 지상파방송 3사의 방송시장 내 영향력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을 가속화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방송광고시장 내 매체별 점유율 변화 추이는 방송시장에서 지상파사업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준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방송광고시장 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체 점유율은 2015년 55.0%, 2016년 50.4%, 2017년 44.6%, 2018년 40.3%, 2019년 36.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PP사업자는 2015년 38.9%에서 2016년 41.9%, 2017년 46.3%, 2018년 50.1%, 2019년 52.9%로 성장세를 보이는 점이 대조적이다(<표 5-2> 참조).

45) 외주인정자문위원회 평가 결과, KBS1TV, KBS2TV, SBS의 2018년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일부가 순수외주제작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방송평가 기반조성 2019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상의 수치와 <표 5-1>의 2018년도 편성비율 수치간 차이가 있다.

<표 5-2> 매체별 광고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2015~2019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방송광고시장	34,736	32,225	31,663	32,275	30,009
지상파방송	19,112	16,228	14,121	13,007	10,999
(비중, %)	(55.0%)	(50.4%)	(44.6%)	(40.3%)	(36.7%)
PP	13,520	13,488	14,669	16,167	15,885
(비중, %)	(38.9%)	(41.9%)	(46.3%)	(50.1%)	(52.9%)

주 1) 지상파방송에는 KBS, MBC, SBS, EBS, 지역MBC, 지역민방, 라디오방송 등이 포함되었으며 PP에는 종편PP, 지상파PP, 홈쇼핑PP 등이 포함됨.

2) 비중(%)은 전체 방송광고시장 대비 각 지상파방송 및 PP의 비중을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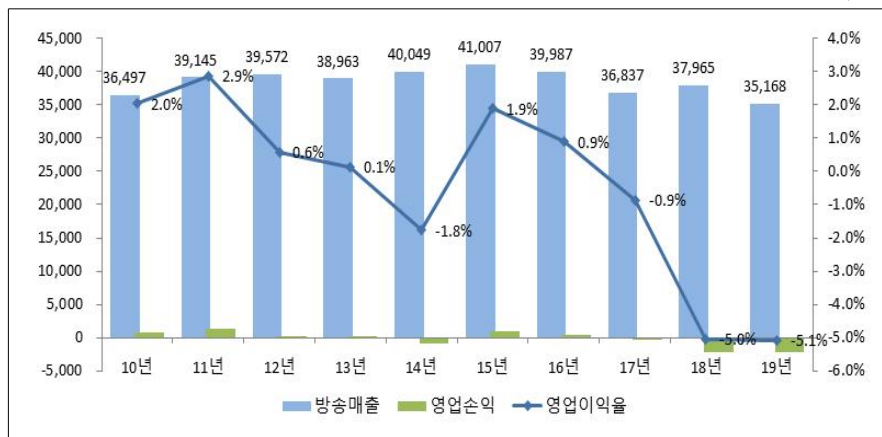
3) SO, 위성, IPTV, CP, DMB는 생략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20)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여기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최근 방송사업매출액과 영업손익 현황은 해당 사업자의 악화된 경영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2019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은 3조 5,168억원으로 2018년 대비 -7.4%p(2,797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손실은 2018년 -2,140억 원 대비 97억원 감소한 -2,140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지상파 방송사업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2010~2019년)

(단위: 억 원,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20)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셋째, 외주제작사에게 외주제작 편성 플랫폼이 증가했음에도 의무편성 비율은 과거의 편성비율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별다른 변화가 없어 외주제작시장의 변화 양상을 해당 규제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9년 6월부터 종편PP(지상파 3사와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해당)에 대해서도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전체 방송시간 기준 및 주시청시간대를 기준으로 한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이 시행되었다. 여기에 글로벌 OTT 서비스 동영상 사업자인 넷플릭스(Netflix)가 2016년 국내에 진출한 이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영상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김남두 외, 2019). 이상의 시장 상황에서, 방송사업자는 시장 경쟁 상황은 한층 심화된 반면, 외주제작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편PP 이외에도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대 플랫폼이 형성한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토종OTT 서비스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카카오TV는 2021년도 오리지널 드라마 편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넷플릭스는 2021년도 드라마 제작 편수를 5편에서 9편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카카오TV는 2021년에 15편의 드라마를 제작, 편성할 계획이다(한국경제, 2020. 10. 26).

넷째, 국내 TV매체 소비시장의 점진적 상황 변화는 현행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 점검을 더욱 촉구한다. 최근 순수외주제작과 관련한 편성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MPP 사업자의 콘텐츠 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국내 TV매체 소비시장은 지상파방송 3개사, 종편 PP 4개사, CJ ENM의 삼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김남두 외, 2019). 이와 같은 소비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진다.

다섯째, 외주제작사의 육성과 방송제작원의 다양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이 특정 부문에 편중되면서, 외주제작 시장 내 장르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드라마 장르의 외주제작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다큐, 교양 등 비드라마 장르는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어, 해당 부문의 진흥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를 개선 시 반드시 고려할 지점이다(김남두 외, 2019).

여섯째, 현행 반기 단위의 산정기간을 연간 단위로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드라마, 예능 등 주요 프로그램 장르는 제작상황,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돌발 악재, 월드컵, 올림픽 등 편성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여러 내외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대비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는 시즌제 프로그램 편성 등을 주요 편성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작환경과 편성전략의 변화를 현행 편성규제의 산정기간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방송사업자의 편성이 경직됨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지역방송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MBC 및 지역민방 등의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방송은 열악한 외주제작환경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대부분 수증계를 통해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방송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는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를 충족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역성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한다.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의 부족은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역량 저하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편성규제는 지역성 구현이라는 지역방송의 설립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제2절 개선 방향 관련 연구반 의견

1. 전체 방송시간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에 대한 의견

연구진은 연구반의 전문가들과 현행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여러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별 규제 형평성에 관해 연구반의 의견을 구했다. 연구진은 먼저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 3사와 종편PP에 대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

제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수준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공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연구반에 제시하였다. 이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개선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처한 부정적 내외부 요인⁴⁶⁾을 고려하여 의무편성 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또 앞서 언급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46) MPP의 성장 등으로 인해 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해진 점, 지상파 3사의 최근 경영상태가 악화된 점, 드라마 등 고비용 외주제작 프로그램에서 제작비 상승 압박이 커지는 점(김남두 외, 2019)

의무편성 비율 개선안을 연구반과 논의하였다. 개선안의 골자는 현행 편성고시 중“순수의주제작 편성비율 산정 시, 주시청시간대 교양분야 순수의주제작물 편성시간 110% 인정”을 교양 부문에 가중치 부여를 국한하지 않고 주시청시간대의 모든 분야로 순수의주제작물 편성시간 인정(110%)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었다. 프로그램 포맷의 진화 양상이 장르의 혼종, 혼합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과 방송법령에서 오락 프로그램이 지니는 긍정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오락 프로그램을 ‘덜 공익적’인 콘텐츠로 간주하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김남두 외, 2019). 선행연구 또한 이러한 논의를 지지한다. 배진아(2020)에 따르면, 오락 프로그램이 교양 프로그램에 비해 공익적이지 못하고 유해하다는 편견이 존재하지만, 공익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양질의 오락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품질의 교양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p.37).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오락 프로그램에 내재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순수의주제작물 편성규제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연구반과 공유, 논의하였다.

상기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를 대상으로 한 순수의주제작물 편성규제 개선안에 대해 연구반 전문가의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안으로부터 한층 더 나아가 순수의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해당 전문가는 OTT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치열해진 방송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방송사업자들이 스튜디오 체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런데 순수의주 의무편성 비율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 방송사업자들의 적극적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순수의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또 다른 전문가는 순수의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의 정책적 도입 취지 및 정책 도입 당시와 매우 상이한 일부 방송사업자의 위상 변화를 감안한 순수의주 의무편성 규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해당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순수의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규제는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중소제작사들의 진흥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본래의 규제 취지와 달리 드라마제작사 등 특정 부문의 일부 대형제작사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위시한 레거시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과거의 위상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제작

사를 진흥하고 견인하는 역할이 여전히 해당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전문가는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에 공감하였다. 해당 전문가는 특별히 장르 3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산정시 주시청시간대 가중치를 교양 장르에만 한정하던 것을 모든 장르로 확대한 것은 적절한 개선안이라고 평가하였다.

큰 틀에서는 위 주장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맥락은 다소 다른 주장 또한 제기되었다.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규제의 도입 취지는 앞에서 몇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제작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외주제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드라마 부문과 비드라마 부문의 비대칭 성장에 주목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는 현재 드라마 부문의 외주제작시스템은 양적·질적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제작원의 다양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교양·다큐 부문의 외주제작시스템은 성장과 안착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순수외주제작 비율 산정 시 현행 가중치 부여 대상을 교양부문에서 모든 부문으로 확대하는 연구진의 개선안은 외주제작사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격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현행 규제대로 가중치 부여 대상을 교양부문으로 제한하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자체를 낮추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진은 또 지역MBC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30%) 및 지역민방 사업자에 대한 의무 편성비율(3.2%)에 대한 규제 타당성을 연구반과 논의하였다. 연구반은 지역방송사업자 대상 순수외주 의무편성 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들어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반 전문가들은 지역방송의 대부분이 수중계를 통해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쟁점과 일치하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 편성 구조가 지역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역량을 약화시켰으며, 약화된 자체제작 역량은 지역성 구현이라는 지역방송사의 근원적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음을 강조하였다.

2.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에 대한 의견

학계와 관련 업계는 주시청시간대를 기준으로 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전체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한 의무편성 비율 규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시청시간대를 기준으로 한 의무편성 비율 규제를 존속시킴으로써 규제 대상사업자는 자칫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이러한 중복 또는 이중규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권을 제약할 여지가 다분했다. 둘째, 방송사업자들이 주시청시간대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법정 의무편성 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주된 장르는 외주제작에 의존하는 드라마 장르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책으로 연구진은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 규제 폐지안을 연구반에서 논의하였다.

일부 연구반 전문가들은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규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폐지가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먼저, 연구반 전문가는 규제 개선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였다. 해당 전문가에 따르면,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제도 폐지 시, 외주제작사 뿐 아니라 유관협회⁴⁷⁾로부터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규제를 받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이 해당 규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다, 폐지를 반대하는 사업자들을 무마하면서까지 눈에 띄는 실익이 없어 보이는 규제 개선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포함한 복잡한 규제 개선 절차를 굳이 밟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연구진이 제기한 규제의 실효성 저해 요인에 동의 하면서 해당 규제의 폐지안을 찬성하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전문가는 주시청시간대 드라마 편성으로 순수외주의무편성 비율이 충분히 충족되는 현실과 방송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어려워진 측면을 고려해 주시청시간대 의무편성 제도는 불필요한 이중규제이며 실효성이 낮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47)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Korea Drama Production Association, KDPA),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orea Independent Productions Association, KIPA)

제6 장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의 쟁점 및 개선 방향

제1 절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은 지상파사업자 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애니메이션 창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주성희·김창희, 2017), 궁극적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를 위해 현행 편성규제는 <표 6-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상파방송사업자⁴⁸⁾와 종편PP, 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는 애니메이션 전문PP에 대해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6-1> 국내제작 신규애니메이션 편성규제 현황

지상파		지상파DMB	종편PP		애니전문PP	
KBS, MBC, SBS	1%↑	0.1%↑ (시행 유예)	0.3~ 1.0%↑	500억↓ : 0.3%	0.3~ 1.0%↑	50~100억 : 0.3%
EBS	0.3%↑			600억↓ : 0.5%		150억↓ : 0.6%
				700억↓ : 0.7%		200억↓ : 0.8%
				700억↑ : 1%		200억↑ : 1%

이상의 규제 도입 및 취지가 방송사업자의 내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의 시급하다는 견해가 더불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지상파방송 3사의 경영상태 악화와 VOD 시청과 OTT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애니메이션 소비 증가 등이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방송학계 등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예: 심미선·홍원식, 2019. 10. 11)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과 문제점이다.

48) 지역방송사업자 제외

첫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의무편성에 따라 지상파방송 3사와 종편PP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해당 방송사업자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시청률 부진으로 인해 애니메이션 편성을 통한 광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편성으로 광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사업자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비용⁴⁹⁾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⁵⁰⁾. 선행연구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규제는 이들 방송사업자에게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김남두 외, 2019).

둘째, 이용자의 애니메이션 시청행태 변화와 애니메이션 공급 플랫폼의 증가로 인해 지상파방송 3사와 종편PP가 애니메이션 소비의 주요 창구로 기능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애니메이션의 주요 소비층인 어린이들은 텔레비전 매체보다 모바일 매체에 친숙하다. 어린이들은 유튜브, OTT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자신의 기호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애니메이션을 소비할 수 있다. 이렇듯 애니메이션 시청행태가 방송을 통한 시청에서 벗어나 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시청행태 양상도 더불어 변모하고 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소비 창구 자체가 확대되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전문PP가 또 다른 애니메이션 소비 창구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표 6-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BS는 최근 3년간 지상파방송 3사의 애니메이션 공급량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애니메이션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라는 해당 규제의 도입 목적을 지상파방송 3사와 종편PP를 통해 여전히 달성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9) 여기서 ‘경제적 비용’은 애니메이션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과 다른 프로그램 대신 애니메이션을 편성함으로써 추가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김남두 외, 2019, p.67).

50)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애니메이션제작 유관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해당 규제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표 6-2> 지상파방송 4사의 전체 애니메이션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추이(2017~19년)
(단위: 분, %)

채널	애니메이션 편성시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애니메이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전체 애니메이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전체 애니메이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KBS 1TV	4,748	4,694 (98.9%)	4,445	4,445 (100%)	4,607	4,447 (96.5%)
KBS 2TV	4,365	4,365 (100%)	3,475	3,475 (100%)	3,520	3,200 (90.9%)
MBC	7,640	7,640 (100%)	7,080	7,080 (100%)	7,045	7,045 (100%)
SBS	6,660	6,755 (101.4%)	6,800	6,800 (100%)	6,695	6,695 (100%)
지상파3사 합계	23,413	23,454 (100.2%)	21,800	21,800 (100%)	21,867	21,387 (97.8%)
EBS	81,700	61,045 (74.7%)	81,211	64,535 (79.5%)	80,271	52,315 (65.2%)

자료: 심홍진·김청희(2018, 2019, 2020 발간 예정),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중 지상파 3사
및 EBS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시간 변동추이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셋째, 방송법 시행령에서 지상파방송 3사(EBS 제외)만 여타 방송사업자와 별개로 국내 제작 신규애니메이션을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기한 <표 6-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종편PP와 애니메이션 전문PP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0.3에서 1%까지 차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지상파방송 3사는 방송사업매출액 등 특정 차등 기준 없이 1% 이상을 일괄적으로 부여 받고 있다. 방송법에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을 시청률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방송법 제71조제3항)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준을 감안할 때, 지상파방송 3사만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에서 예외 사업자로 둘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한편, <표 6-3>에 나타난 바와 같이, EBS는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을 법정 의무편성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다.

<표 6-3> 지상파방송 4사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추이(2017~2019년)

채널	2017년	2018년	2019년	의무편성비율
KBS 1TV	1.04%	1.03%	1.04%	1% 이상
KBS 2TV	1.02%	1.02%	1.01%	
MBC	1.21%	1.16%	1.14%	
SBS	1.02%	1.04%	1.03%	
EBS	1.64%	1.11%	1.09%	0.3% 이상

자료: 심홍진·김정희(2018, 2019, 2020 발간예정)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중 지상파 3사 및 EBS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시간 변동추이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넷째, EBS는 다른 지상파방송 3사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을 애니메이션 제작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 할 때, EBS의 국내 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가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⁵¹⁾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제작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⁵²⁾의 의견에 따르면 EBS는 연간 약 20~24억에 이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을 애니메이션 제작 및 구매에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니메이션 제작 및 편성을 위해 광고수익이 아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EBS가 여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비해 시청률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규제는 이해관계자 양측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 제도, 특히 신규편성 총량제는 그간 오랫동안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라는 점(김남두 외, 2019; 유승훈 외, 2009)과 여전히 지상파 3사⁵³⁾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⁵⁴⁾ 양측이 제시하는 주장에 현저한 온도차가 존재

5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52)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진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및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해당관계자에 따르면, EBS는 공모제도를 통해 공동제작이 가능한 작품을 선정하고, 제작 및 방영권 구매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다는 점은 규제 개선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2절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연구반에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총량제) 규제⁵⁵⁾를 중심 의제로 선정하고 관련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 중 애니메이션 분야의 의무편성 규제 또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연구반의 논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상기한 쟁점과 문제점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방송사업자 유형별(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 등)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편성 비율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해당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3사(EBS 제외)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비율이 1% 이상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반면 종편PP 및 애니메이션 전문PP는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0.3%에서 1% 이상까지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53) 선행연구(김남두 외, 2019; 유승훈 외, 2009)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3사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의 폐지나 적어도 신규 편성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의무 편성비율의 하향, 편성시간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어린이 시청시간대의 확대, 신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재방송 인정 등을 희망하고 있다.

54)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는 방송사업자의 애니메이션 구매 및 편성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유통 경로일 뿐 아니라, 비록 지상파방송사업자 3사의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예전보다 감소했을지라도 지상파방송사업자 3사와 EBS가 여전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1차 유통창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김남두 외, 2019). 한편 본 연구진이 초청한 애니메이션 유관협회 관계자들은 애니메이션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지원책 등 규제완화에 따른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55)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관련 법규 중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는 방송법 제 71조 제2항, 방송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편성고시 제3조 제3항 참조, 법령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 참조

이러한 규제 환경 아래에서, OTT 서비스 등 각종 방송 경쟁 매체의 등장에 따른 심화된 시장 경쟁상황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을 위해 매년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사업자 또한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차등화하는 개선안을 연구반과 논의하였다.

연구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방송사업자간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으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규제 합리화에 대한 근거는 연구반 내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구반 전문가는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규제를 편성규제의 경로의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조항으로 평가했다. 애니메이션 시청은 이미 전문PP와 VOD, OTT 서비스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의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는 몇몇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방송사의 편성권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중복규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전문가는 상술한 견해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단시일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연구진이 제시한 방송사업매출액을 활용한 개선안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 연구반 전문가들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규제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라는 점을 주지하면서도, 최근의 미디어 환경 변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이 지상파사업자 등 전통 미디어에 의존하여 산업을 지탱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통 미디어는 OTT 서비스를 비롯한 경쟁 미디어의 증가로 힘겨운 생존 경쟁 상황에 내몰린 어두운 현실을 차치하더라도, 애니메이션 산업이 스스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거와 다른 발전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견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연구진의 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규제 완화는 국내 애니메이션 생태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인데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이 장기간 지속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애니메이션 사업자 등 대상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연구반 전문가들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규제 개선안에 EBS가 규제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지점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EBS 프로그램의 특성, 애니메이션 시장 내 EBS의 영향력, EBS의 채원구조 등을 고려할 때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대한 EBS의 역할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규제 개선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⁵⁶⁾하였다.

끝으로 규제 대상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만 방송매출액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 이상의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대칭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었다.

56)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을 다음과 같은 3가지 근거로 뒷받침하였다. (1) EBS의 주요 시청 대상 중 하나가 애니메이션의 주된 소비층인 어린이와 유아라는 점, (2)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전통사업자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애니메이션을 수년간 편성하고 있는 점(<표 6-2> 참조), (3)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애니메이션 제작 및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제 7 장 기타 편성규제 항목별 쟁점 및 개선 방향

제 1 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에 대한 검토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방송법은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전문편성 PP와 지상파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주된 방송분야가 편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동법의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며(방송법 제69조 제4항), 동법의 시행령에서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70% 이상, 전문편성 PP는 80% 이상을 주된 방송분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해당 규제는 다채널 시대에 전문편성 사업자들이 전문분야 외의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상기한 규제 환경과 규제 도입 취지 아래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쟁점은 방송 매체 간 차등화된 규제가 적법한 정당성 또는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마련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 전문편성 채널(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 60%, SO·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에 대해서 70%, 전문편성 PP 채널에 대해 80%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규제대상 방송 사업자는 모두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매체 유형간 의무편성 비율에 10%p 간격의 격차가 있다. 특히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⁵⁷⁾에 상대적으로 낮은 의무편성 비율이 부과된 점은 규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김남두 외, 2019). 실제로 전문편성PP 채널이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다 강화된 수준의 편성규제를 적용 받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 문제는 전문편성 PP에 대한 이러한 규제 차등이 편성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시장에서 전문편성 PP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57) EBS를 제외하면 모두 지상파 라디오 방송채널이다.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주된 방송분야 분류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문편성PP의 '주된 방송분야' 판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1990년대 존재했던 프로그램 공급업(오늘날의 텔레비전 PP)에 적용되었던 사업 허가제 및 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가 1999년 PP 등록제 도입을 계기로 폐지되면서(김남두·우혜진, 2015), 종전의 프로그램 공급분야 분류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주된 방송분야 분류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PP 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주된 방송분야의 체계적 분류가 매우 어려워진 점과 관련이 있다(김남두 외, 2019)⁵⁸⁾.

세 번째 쟁점은 전문편성PP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이 전문편성PP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제약함으로써 매체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편성PP는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시청자의 니즈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문편성PP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전문편성PP가 혁신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편성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 마저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한이 있을 뿐 전문편성PP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성 및 운용의 자율성이 높다는 평가다. 전문편성PP는 해당 편성규제로 인해 시장 내 채널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 채널 경쟁력 약화로 귀

58) 1990년대에는 지상파 방송을 규율하는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케이블 방송)을 규율하는 구 종합유선방송법이 공존하였다. 1991년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 공급업(오늘날의 텔레비전 PP)에 대해서는 허가제와 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가 시행되어, 정부는 프로그램 공급업자 허가에 앞서 프로그램 공급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였다(1994년 1차 프로그램 공급업자 허가 당시에는 16개 공급분야 지정). 하지만 종합유선방송의 활성화가 지연되자,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던 1999년 보도 프로그램 공급업에만 허가제를 유지하고(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의해 승인제로 대체) 프로그램 공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는 종전의 방송법상 특수방송과 구 종합유선방송법상 프로그램공급업을 통합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이라는 범주를 신설하였으며, 특수방송 허가에 적용된 '주된 방송사항'과 프로그램공급업에 적용된 '프로그램 공급분야'는 '주된 방송분야'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다수의 신규 사업자들은 임의적으로 주된 방송분야를 등록하여 PP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법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김남두·우혜진(2015, 84-19쪽)를 참조할 것.

결될 수 있다.

2.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연구반 전문가들은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로 인해 유료방송 채널이 채널별 특색을 살리고, 다채로운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시청권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위에서 서술한 이슈와 쟁점 이외에도 연구진이 제시한 현행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연구진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해당 편성규제의 주요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사안을 연구반과 공유하였다. (1)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유입으로 방송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청자의 관심도 더불어 변화하면서, 방송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노력과 시도가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비율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는 점, (2) 통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적용을 받던 전문편성PP가 특별히 강화된 편성규제를 적용받음으로써 편성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OTT 서비스 등의 사업자와 경쟁 시, 해당 편성규제로 인해 전문편성PP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규제가 내포하고 있는 쟁점 등을 고려하여 (1)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하고, (2) 전문편성PP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기존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반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였다. 나아가 최근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의 다양성 및 방송 전반의 다원성이 상당 부분 확보되었으며, OTT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방송영상의 다양성이 한층 제고된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반적 변화를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연구진이 제시한 규제 개선안에 동의하였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개선안이 제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편성비율 산정 기준을 매반기로 변경한다면,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율성을 전반적으

로 제고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며 연구진의 개선안을 지지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해당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문가들은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안 중 하나인 전문편성PP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10%p 하향 조정하는 것에 동의할 뿐 아니라,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안의 방향대로 단계적 완화 조치가 급진적 완화 조치에 비해 현실적이라는 점에도 동의하였다.

반면 연구반 전문가의 일부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불분명하고 느슨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실시결과를 매월 방송통신사무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고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자사의“주된 방송분야”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된 방송분야 편성 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2 절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에 대한 검토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현재 방송법령과 편성고시에서는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외에서 제작되어 수입되는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⁹⁾. 해당 편성규제의 목적은 해외에서 수입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이 과도하게 특정 단일 국가의 제작물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편성규제와 관련한 쟁점과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특정 국가의 문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전문편성PP의 경우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로 인하여 채널 등록 취지 및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외문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PP가 해당 편성규제 준수를 위해 채널의 정체성(외국문화 소개)과 무관한 제3국의 프로그램을 편성⁶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문화

59) 다만 편성고시 제8조에 따르면 해외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매 반 분기별로 2편 혹은 120분 이내로 편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장르의 시청을 저해함으로써 시청자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문화 장르 프로그램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어 미디어 다양성을 저해할 소지도 발생한다.

둘째, VOD, OTT 서비스 등 해외 영상 콘텐츠의 소비 경로가 다원화된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해당 편성규제의 실효성은 저하시키는 반면, 사업자에게는 자유로운 편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채널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전문편성 채널의 증가, VOD 서비스 이용 보편화, 인터넷 기반 OTT 서비스의 보급 등으로 해외 영상 콘텐츠의 소비 경로가 다원화된 최근의 미디어 이용 환경을 염두에 둘 때, 과연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김남두 외, 2019).

셋째,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이 ‘매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단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제의 산정기준은 ‘매반기’인데 반해 국내 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규제의 경우 ‘매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반기와 매년 단위로 산정기준을 차등하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연구진은 상기한 쟁점과 문제점을 연구반과 공유하고, 나아가 해당 편성규제의 문제점과 쟁점, 유관 연구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안을 연구반에게 제시하였다. 개선안은 (1) 1개 국가 수입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을 현행 80% 이내 편성에서 90% 이내로 완화하고, (2)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매년’으로 변경하였다. 여기에 개선안은 (3) 특정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문편성PP를 해당 편성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연구반 전문가들은 연구진이 제시한 해당 편성규제 개선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한 가운데, 연구반 내 다른 전문가는 해당 규제의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전문가는 개선안에 “90% 이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두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

60) 연구진은 PP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해관계자는 채널(채널W(일본문화), haoTV(중국문화), 중화TV(중화문화))이 특정 국가의 장편시리즈물을 편성할 경우, 편성 비율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나라의 방송콘텐츠를 추가로 수입해야하는 제도적 모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는 특정 문화의 제작물을 90% 이내로 편성하고 나머지 10%를 다른 국가의 콘텐츠로 편성한다고 해서 해당 규제의 도입 취지 중 하나인 다양한 국제 문화 수용을 보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였다. 또한 전문가는 이용자들이 OTT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해외문화에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거론하면서, 1개국 수입물의 상한을 90% 이내로 완화하는 개선안은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해당 전문가는 연구진의 개선안이 방송 매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정한 정책 효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규제의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규제 폐지안에 반해, 연구반 내 일부 전문가는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해당 전문가는 지금은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발전하여 현행 편성규제 없이도 대중문화의 특정 국가 편중 현상을 막을 수 있지만, 향후 다시 특정 국가로의 대중문화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FTA 역진방지조항으로 인하여 일단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없으므로, 해당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제 3 절 지상파 DMB 규제 적용에 대한 검토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DMB)는 <표 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

<표 7-1>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규제 현황

구분	종합편성 오락	전문편성 주된분야	수중계	국내제작 프로그램	국내제작 영화·애니·음악	국내제작 신규애니	1개국 수입물
의무 비율	50%↓	60%↑	80%↓	60%↑	25%↑ 35%↑ 60%↑	0.1%↑	80%↓
비고	—	—	—	—	—	유예중 (고시부칙)	—

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항목별 편성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방송법 제2조에 따라,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 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지상파DMB에 적용되는 편성규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규제대상이 되는 지상파DMB가 매체로서의 영향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DMB는 지상파 방송의 이동수신을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되었으나, 방통위의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률이 2012년 30.8%, 2013년 31.1%, 2014년 27.0%, 2015년 16.4%, 2016년 9.6%, 2017년 8.4%, 2018년 7.5%, 2019년에는 6.1%까지 감소했다(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12-2019). 또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0)에 따르면 광고매출액은 2012년 76억 원에서 2019년 18억 원으로 하락하는 등 지상파DMB의 매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현재는 재난방송 등 공공 수요가 주를 이룰 뿐 일반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매체 자체가 존립 위기에 놓인 상태이다. 지상파DMB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지역방송사 또한 매체 영향력을 상실한 지상파DMB 운영에 따른 고충을 피력하고 있다. 지역방송사는 극히 저조한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송출 비용이 소요되어 현상 유지가 힘들다는 의견이다.

2.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연구진은 연구반과 상기한 문제점을 공유하였다. OTT 서비스 등 모바일 신규 플랫폼의 다양화에 따라 지상파 DMB의 매체 경쟁력 약화가 한층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DMB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이다.

논의 결과, 연구반 전문가들은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규제 전면 유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반 전문가들은 우선 연구진의 개선안을 시행하되, 중장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상파DMB는 이미 플랫폼 간 경쟁에서 충분한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매체로서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연구진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상파DMB가 생존하기 위해

서는 해당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편성을 통해 지상파DMB만의 적소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편성규제를 전면 유예하고 지상파 DMB의 차별적 편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또 다른 전문가는 편성규제의 유예기간을 2025년으로 명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해당 전문가는 유예기간 동안 시장 상황을 주목하고, 편성유예가 시장상황에 미치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시, 해당규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연구반의 일부 전문가는 지상파 DMB의 매체 영향력이 재활성화된 시점을 유예기간의 종료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시점부터 현행 규제를 재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상파DMB가 활성화된 후에 편성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 영향력이 낮은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규제의 적용은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제 4 절 규제 항목별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1. 현행 규제 관련 쟁점 및 문제점

현행 편성규제를 살펴보면 <표 7-2>에서 볼 수 있듯이, 편성규제 항목은 월, 분기, 반기,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산정되고 있다. 해당 산정기준이 마련된 시점은 각각의 편성규제 항목별 도입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1963년 12월에 제정된 방송법에서 ‘프로그램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을 도입한 후,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현행 편성규제의 전체적인 열개를 갖추었다. 이후 1991년 방송프로그램 의무 외주비율 고시, 1995년 케이블TV의 공급분야별 부편성비율 규정 도입, 1998년 지상파TV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규정 도입, 2000년 ‘장르별 국내제작 편성비율’, ‘다른 한 방송사업자 편성비율’,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도입, 2004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이 도입되면서 현행 편성규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표 7-2> 편성비율 산정기간 현황

산정기간	편성규제 항목
월	• 오락 프로그램(종합편성), 주된 방송분야(전문편성)
분기	•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비율
반기	•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국내제작 프로그램, 1개국 영화·애니·대중음악 수입물
년	• 국내제작 영화·애니·대중음악,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체계가 수립된 시점의 방송환경과 오늘날의 방송환경은 이용자, 사업자, 경쟁 체제, 산업 규모, 시장구조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현격한 환경 변화는 편성규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부적 측면에서 편성규제 항목별 산정기준의 경직성을 야기한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율권 제약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방송 미디어 시장의 포화 속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귀결된다.

현행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무편성비율 산정기간이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혼재되어 방송사업자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편성의 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또 오락 프로그램 및 주된 분야 편성규제는 ‘매월’ 단위의 단기 편성비율 산정기간 때문에 편성의 경직성을 높여 방송사업자의 시즌제 프로그램 편성 등의 탄력적 편성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방송기술의 발전으로 UHD 프로그램이 점차 자리매김함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UHD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를 위해 드라마 등 오락 프로그램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함정에 빠지곤 한다.

2.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연구진은 현행 산정기준에 내재된 여러 문제점을 연구반과 공유하였다. 아울러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연구반에 제시하고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개선안은 편성규제 항목별로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등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 또는 매년’으로 통일하는 안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은 월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비율은 분기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은 반기 단위에서 년 단위로 변경하여 산정기준의 유연

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개선안에 대해 연구반은 현 방송환경 변화에 부합하며,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율성 제고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반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면, 첫째, 산정기간의 통일 및 확대는 각 영역별 편성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권을 신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둘째, 시청자의 일상적 흐름에 부응해야 하는 편성의 특성상, 계절별 또는 계기별 변동성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개선안은 이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편성규제의 산정기간 확대 및 표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안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셋째, 방송사업자의 규제 준수를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복수의 편성규제 항목마다 산정기간이 제각각인 탓에 산정기간을 산출하는 업계 실무자 역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 가운데 개선안은 사업자들의 혼동 가능성을 줄여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연구반의 통일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안을 향후 편성규제 산정기준의 개정안으로 확정하였다.

제 8 장 결 론

연구의 결론에서는 4장에서 7장에 걸쳐 검토한 편성규제 항목별 규제 개선안(또는 수정안)을 제안한다. 규제 개선안의 도출 절차는 (1) 연구진이 해당 규제별 쟁점과 문제점을 먼저 연구반과 공유하고, (2) 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종합하여 연구진이 마련한 개선안을 (3) 연구반의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 개선안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개선안(또는 수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기보다는 대표적인 개선안(수정안)만 제안한다.

제 1 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편성비율 제한 개선 방향

연구반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에 부정적 견해도 존재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오락과 교양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장르 간 혼합 현상이 일반화되는 현실에서,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규제가 편성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반은 또 편성규제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상의 연구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현행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드라마·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에 규제 대상자의 규제 준수비용을 낮추고 편성의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편성비율의 산정기간을 현행 ‘매월’에서 ‘매반기’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론 이러한 개선안의 완결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추후 장르 3분류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유형별 편성비율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의 개선 방향

1. 전체 방송시간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관련 제안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한다. OTT 서비스 등 방송 외부 환경의 변화, 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정책목표의 성취도, 프로그램 포맷의 진화, 오락 프로그램의 공익적 속성 등을 감안하여 주시청시간대의 순수외주 편성시간 110% 인정 범위를 주시청시간대 '교양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2.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관련 제안

연구진은 주시청시간대 의무편성규제 폐지안을 연구반에서 논의하였다. 연구반의 전문가들은 주시청시간대 비율 규제의 문제점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플랫폼의 다양화 및 시청행태 변화, 이중규제(전체 방송시간대 비율, 주시청시청시간대 비율)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권 저해, 주시청시간대 의무편성비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시청시간대 기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규정의 폐지를 제안한다.

3. 지역방송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관련 제안

연구진은 지역방송 순수외주 규제를 연구반 및 이해관계자와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은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관련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연구진은 순수외주 규제 충족을 위한 과도한 수중계 의존, 지역방송의 어려운 경영상황과 열악한 외주제작환경, 자체제작을 통한 지역성 구현이라는 지역방송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방송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제3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진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의무 편성과 관련한 개선안에 대한 연구반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상 변화, 애니메이션 시청 경로 및 시청방식의 다변화, 규제 중복 가능성(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 신규 의무 편성), 편성권 저해,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도 현행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 비율을 방송사업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제안한다.

한편, 방송사업자에 대한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완화 방안과 애니메이션 사업자 진흥 방안은 각 사업자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 협의에 기초하여 유관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기 타 편성규제 항목별 규제 개선 방향

1.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규제 관련 제안

연구진은 전문편성PP의 주된 분야 편성비율에 대한 개선안을 연구반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 개선안을 제안한다. 연구진은 규제 형평성, 매체 경쟁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전문편성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고, 산정기간 또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매월’ 산정에서 ‘매반기’ 산정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2.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관련 제안

연구진은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연구반과 논의하고, 연구반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한다. 연구진은 해외문화 접촉 경로 다원화, 편성권 제약, 매체 경쟁력 저하, 채널 정체성, 등록 취지 등을 감안하여 현행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내에서 90% 이내로 완화하고, 산정기준 또한 ‘매반기’에서 ‘매년’으로 변경하되, 특정 국가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PP를 1개국 영화·애니·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안을 제안한다.

3. 지상파 DMB 규제 적용 관련 제안

연구진은 연구반의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다. 연구진은 지상파 DMB의 서비스 이용률 감소, 광고매출 하락, 매체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DMB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의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수정안을 제안한다. 다만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려는 취지라면 유예가 아니라 폐지가 바람직하나, 규제 폐지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은 유예하고 추후 연구과제 등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규제 항목별 산정기준 관련 제안

연구진은 규제 항목별 산정기준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연구진은 편성의 자율성 제고, 규제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항목별로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등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 또는 매년’으로 완화하는 개선안을 제안한다.

규제 항목별로 살펴보면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 및 주된 방송분야 편성 비율은 월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지역민방 수증계 편성 비율은 분기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및 1개국 수입물 편성 비율은 반기 단위에서 년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산정기간의 유연성을 높였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곽동균·정은진(2018), 『혁신서비스 성장지원을 위한 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2018-0-003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입법조사처(2020. 5. 30.), 『제21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 김남두·박병선(2013), 『2013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3-58, 방송통신위원회.
- 김남두·우혜진(2015), 『보도 콘텐츠의 구성요소 분석 및 법제 정비방안 연구』,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5-34. 방송통신위원회.
- 김남두·주성희·김청희·노은정(2019), 『방송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중계비율 등 편성규제 개선 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9-24) 방송통신위원회.
- 김호정(2018), “영국 ODPS 규제 동향: OFCOM-ATVOD 공동규제에서 단독규제체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지 제30권 4호.
- 방송편성정책 연구위원회(2000), 『2000년 방송편성 쿼터정책 연구』
- 성옥제·이종원·정용찬·황준호·나성현·송종길·최민재·조용환·김인희(2008),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중장기 편성정책 수립방안』,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08-14, 방송통신위원회.
- 성옥제·박민성(2011), 『지상파 방송사업 선진적 규제체계 마련: 허가, 소유, 편성규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11-4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심미선·홍원식(2019. 10. 11.), “방송산업 규제의 현안과 과제 편성규제”,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방송회관) 2부 발제문.
- 심홍진·김청희(2017), 『2017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2016년 자료)』,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17-07, 방송통신위원회.
- 심홍진·김청희(2018), 『2018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2017년 자료)』, 연구기관: 정보통신

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18-08, 방송통신위원회.

심홍진·김청희(2019), 『2019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2018년 자료)』,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19-10, 방송통신위원회.

심홍진·김청희(출간 중), 『2020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2019년 자료)』,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20-12, 방송통신위원회.

유승훈·정군오·한종호·이승재·김효주(200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09-19, 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우·황성기·장경원·김태호·안정민·박하영(2010), 『방송 편성규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10-12, 방송통신위원회.

정두남·심영섭(2020), 『국내외 OTT 서비스 시장 현황 및 규제정책 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성희·김청희(2017),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따른 편성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7-2, 방송통신위원회.

주성희·이주영(2016),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6-33, 방송통신위원회.

주창윤·황성연·유승현(2012),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 및 도입방안 연구』, 연구기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연구 2012-19, 방송통신위원회.

주창윤·황성연·최명일(2004),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한국언론학회, 방송위원회.

최진웅(2019), “통합방송법의 OTT 법적 쟁점과 과제”. <언론중재> 150호. 언론중재위원회.

최진웅(2020), 통합방송법 1, 2차 논의 과정이 남긴 쟁점과 과제. 언론중재 2020년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콘텐츠진흥원(2012), 『2012년도 애니메이션산업 백서』.

황준호·정은진(출간 중), 『방송·통신·인터넷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법제도 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04) 방송통신위원회.

[해외문헌]

Eggerton, J.(2015. 12. 17.). FCC's Wheeler: MVPD Redefinition Still On 'Pause'.

FCC(2016, May).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 MB Docket No. 15-158, Seventeenth report,
DA-16-510 (2016)

[부록 1]

방송법⁶¹⁾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32호, 2020. 12. 8., 일부개정]

-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0. 27.>
- ⑥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0. 27., 2020. 6. 9.>
- ⑦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

61) 방송법 중 편성규제와 관련한 조항들 중심으로 선별 수록

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20. 6. 9.>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4. 5. 28., 2016. 2. 3.>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14.>

⑩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27., 2011. 7. 14., 2020. 6. 9.>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2.>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②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2., 2012. 1. 17., 2020. 6. 9.>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 17.>

④ 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20. 6. 9.>

⑤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 1. 1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구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17.>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9. 12. 10., 2020. 6. 9.>

② 삭제 <2015. 6. 22.>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6. 9.>

④ 제1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6. 9.>

[부록 2]

방송법 시행령⁶²⁾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 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 3. 20., 2007. 8. 7.>

③ 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62) 방송법 시행령 중 편성규제와 관련한 조항들 중심으로 선별 수록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채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8. 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⑥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4. 11. 24.>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80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1. 8. 19.>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②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1. 영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2. 7. 17.>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12. 7. 17.>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⑤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0. 10. 1., 2011. 12. 2., 2012. 7. 17.>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⑦ 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5항에 따른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8. 19., 2012. 7. 17.>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7., 2018. 12. 24.>

② 삭제 <2016. 5. 27.>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2010. 10. 1., 2016. 5. 27.>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5. 27.>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8. 19., 2016. 5. 27.>

[부록 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0. 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 3.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항·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1. 케이엔엔(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강원민방, 제주방송: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②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1. 케이엔엔(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 경인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경기방송: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7 이내.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전문편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편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③ 방송사업자는 별표2를 충족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이 고시에서 “애니메이션”이란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

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4.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 ④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 제작 대중음악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분류에 따른 방송사업자군 내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제1항 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②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
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
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5 이상

3.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7 이상

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7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다만, 시행 당해년도에는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편성하여야 하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초 연간(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상황 공표시 위 각 호에서 정한 편성비율 및 매출액기준을 재조정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로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방송통
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시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
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

3.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
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제5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 제1항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출자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
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방송프로그램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2.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4.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5. 방송프로그램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6.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 승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 다.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라.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 마. 주간 단위 촬영·작업 계획 및 촬영 장소
 - 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 제작 사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2. 사후 승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 다.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라.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 마. 방송프로그램 사본(방송 편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크레딧이 명기된 국내 및 해외 방송 프로그램 사본)
 - 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 제작 사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내에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 ⑤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문서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제

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제7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 기획서
2.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 애니메이션 줄거리 및 대본
4. 애니메이션 캐릭터집 및 배경집
5.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6. 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함)
7. 애니메이션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8.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9.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은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적은 별표3에서 정한 기준으로 구별한다.

제9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4.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

5.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6.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① 제9조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한 방송프로그램 이어야 한다.

1. 외주제작사가 작가(방송프로그램의 극본, 구성대본 등을 집필하는 자로 여러 명이 집필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2. 외주제작사가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3. 외주제작사가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

4.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조달하는 경우

5. 외주제작사가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1. 방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전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복제·배포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공연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2차적저작물작성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에 대해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라 함은 교섭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사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용)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사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구역이 국외이거나 재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

로그그램을 제공하는 방송,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 밖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백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 제외 방송시간) ①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② 제3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③ 제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다음 각호의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 평일: 7시~9시, 17시~20시
2. 주말 및 공휴일: 7시30분~11시, 14시~20시

④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⑥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교양분야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⑦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30으로 인정한다.

⑧ 제10조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다만,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은 다음 각호의 시간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 평일: 11시부터 15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11시부터 16시까지

제12조(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례)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편성비율 적용기간)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월간: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반기간: 1월 1일부터 6월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72호, 2008.5.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8-135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③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는 에스비에스(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④ 제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해당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3호(2008. 5.19.)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09-27호, 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3호, 20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0-57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반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간 편성비율, 반기간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11-36호, 2011.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51호, 2011.12.2>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1호, 2012.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 및 수입한 외국의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의 편성비율 적용에 관한 특례)삼차원 입체영상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 및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수입한 영화의 편성비율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12-45호, 2012.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방송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에 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4-6호, 2014.6.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반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반기간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15-13호, 2015.7.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2호, 2015.10.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편성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송사업자가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16-9호, 2016.10.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제2호가목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2 이상으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가목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2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2016-15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문화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이상 편성할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17-14호, 2017.12.27>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5호, 2018.11.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8호, 2019.6.17>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호, 2020.3.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저 자 소 개 ●

심 홍 진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언론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 은 진

-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언론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25
방송통신 매체 융합에 따른 편성규제 실효성
제고방안 및 해외사례 비교연구
(Study of the Effective Regulations on Television
Programming in a Converged Media Environment
and Comparison of the Oversea Cases)

2020년 12월 일 인쇄

2020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

인 쇄 인 성 문 화
